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최경덕
최인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경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3-3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ISBN 978-89-6827-985-0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3.32>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15
제2절 이론적 배경	19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	21
제3장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27
제1절 데이터	29
제2절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	31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비공식 돌봄 현황	37



제4장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41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43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50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56
제4절 소결	89
 제5장 관련 제도 검토	91
제1절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93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124
 제6장 결 론	147
 참고문헌	153
 부 록	161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현황	16
〈표 2-2〉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	17
〈표 2-3〉 가족, 친척·이웃·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은 돌봄 내용	18
〈표 2-4〉 비공식 돌봄을 제공한 자와 노인과의 관계별 돌봄 내용	19
〈표 3-1〉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32
〈표 3-2〉 돌봄 제공 여부	34
〈표 3-3〉 돌봄 제공 강도(분포)	36
〈표 3-4〉 돌봄 제공 강도(대상자별)	36
〈표 3-5〉 돌봄 제공 강도(mean test)	37
〈표 3-6〉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mean test)	38
〈표 3-7〉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특성(mean test)	39
〈표 4-1〉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45
〈표 4-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mean test)	47
〈표 4-3〉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근로 여부 변화 양상(mean test)	49
〈표 4-4〉 통제변수 생성	53
〈표 4-5〉 기초통계량	55
〈표 4-6〉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연관성(OLS)	57
〈표 4-7〉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FE)	59
〈표 4-8〉 IV, FE-IV의 1단계 추정(first stage regression) 결과	62
〈표 4-9〉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66
〈표 4-10〉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70
〈표 4-11〉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73
〈표 4-12〉 돌봄 대상자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76
〈표 4-13〉 기준점 변경(돌봄 제공 여부, 주당 돌봄 제공 20시간)	79
〈표 4-14〉 돌봄 강도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80
〈표 4-1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mean test)	82

〈표 4-16〉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짓, 프로빗 모형) ..	84
〈표 4-17〉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은퇴 여부에 미치는 영향	85
〈표 4-18〉 마모 편의 및 표본 선택 편의 확인	88
〈표 5-1〉 가족돌봄휴직 주요 내용	95
〈표 5-2〉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97
〈표 5-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98
〈표 5-4〉 가족돌봄휴직: 인지도	101
〈표 5-5〉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102
〈표 5-6〉 가족돌봄휴직: 활용 실적	103
〈표 5-7〉 가족돌봄휴직: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04
〈표 5-8〉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105
〈표 5-9〉 가족돌봄휴가: 활용 가능 여부	106
〈표 5-10〉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	107
〈표 5-11〉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08
〈표 5-1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	109
〈표 5-1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여부	110
〈표 5-1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	111
〈표 5-1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112
〈표 5-16〉 해외의 가족돌봄휴가제도 현황	115
〈표 5-17〉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인지도 현황	120
〈표 5-18〉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가능 여부	122
〈표 5-19〉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급여 현황	123
〈표 5-20〉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신청·인정 현황	126
〈표 5-21〉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인정등급별 인원 현황	127
〈표 5-22〉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급여 실적 현황	128
〈표 5-23〉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130
〈표 5-24〉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	132



〈표 5-25〉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등급 현황	133
〈표 5-26〉 재가급여 이용자,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특성 비교	135
〈표 5-27〉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1순위)	136
〈표 5-28〉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2순위)	138
〈표 5-29〉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140
〈표 5-30〉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부담 정도	141
〈표 5-31〉 타인의 도움이 불필요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미이용한다고 응답한 자들에게 제공된 도움 현황	142
〈표 5-32〉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재가급여에 대한 인식	143
〈표 5-33〉 재가급여 이용자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재가급여 만족도	143
〈부표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 제공 현황	161
〈부표 2〉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연관성(OLS) ..	162
〈부표 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FE)	163
〈부표 4〉 OECD 가입국 65세 이상 노인의 재가급여 수급 비율	163
〈부표 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제공 빈도별 부담 정도	164



Abstract

Labor Market Outcomes of Informal Caregiver for the Elder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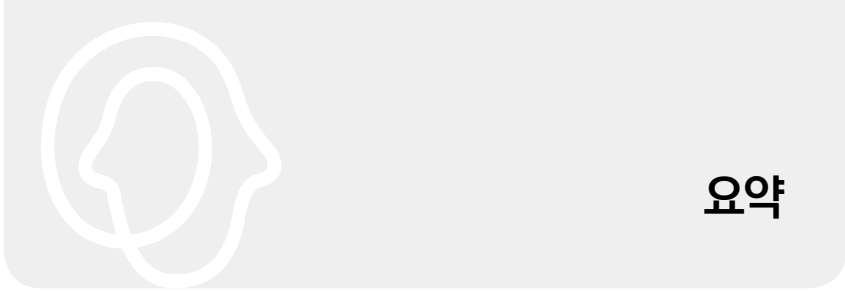
Project Head: Choi, Kyong Duk

With the rapid population aging due to declining birth rates and an increasing life expectancy, the need for care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in Korea. Meanwhile, the decrease in labor supply has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it is known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informal care is provided by the working-age population. This means that informal care may reduce informal caregivers'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negatively affect economic growth.

Using a fixed-effects model,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informal caregiving for the elderly on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informal caregiver.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for the elderly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nual working time, and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The effect is noticeable among those less-educated, aged 55-64 years, women, unpaid family workers, those from a higher-income household, those with a small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those caring for the spouse's parents.

Keyword : elderly, informal caregiving, labor market participati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long term care

Co-Researchers: Choi, Insun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한국에서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돌봄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약 70%는 돌봄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약 90%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도움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계출산율이 경제성장률과 양의 관계가 있으며, 노동공급의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총요소생산성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이 둔화되는 등 노동공급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비공식 돌봄 중 상당수는 생산가능인구에 의해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먼저,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이며, 구성원별로는 어머니, 형제자매, 배우자의 어머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 중 절반 미만이 실제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돌봄의 대상자는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돌봄의 강도(지난 1년 중)는, 돌봄 제공 기간이 평균 44.1주,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평균 36.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과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1%p(13.4%),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10.1%),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6점(4.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제공자들은 근로 강도를 조절하기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돌봄 제공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는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에게서, 남성에게서, 45-54세에 비해서 55-64세에게서, 가구 특성별로는 가구 소득이 평균 미만인 경우에 비해 평균 이상인 경우에,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4명 이하인 경우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에 돌봄 제공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강도인 주당 10시간 미만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및 시사점

실증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비공식 돌봄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활용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지도 개선, 인식 제고 및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 제도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더불어 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노인, 비공식 돌봄, 노동시장 참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노년 부양비¹⁾, 노령화지수²⁾는 각각 15.7%, 21.8, 129.3으로, 2010년에 비해 4.9%p, 7.0, 62.1 증가했다. 고령화는 향후 가속화되어 동 지표들은 2030년 25.5%, 38.0, 3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KOSIS, 2020a).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에 의한 비공식 돌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경희 외(2017, p.384)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는 돌봄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90%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19.0%, 4.2%로 비교적 낮았다.

노동공급 수준과 경제성장 간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노동공급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박소희, 김호범(2007)은 노동력의 양적 변수로서 합계출산율이 경제성장률

1) $[(\text{고령인구}(65\text{세 이상 인구}) \div \text{생산연령인구}(15\text{-}64\text{세}))] \times 100$

2) $[(65\text{세 이상 인구}) \div (0\text{-}14\text{세 인구})] \times 100$

과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하현, 임성훈, 임형우(2019)는 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총요소생산성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생산성을 둔화시킴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공식 돌봄 중 상당수는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uber, Hennessy, Izuni, Kim & Lunsgaard, 2005). 이는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들은 비공식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Heitmueller, 2007; Bolin, Lindgren & Lundborg, 2008; Michaud, Heitmueller & Nazarov, 2010; Casado-Marín, García-Gómez & López-Nicolás, 2011 외 다수). 그러나 한국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며, 패널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점, 돌봄 제공자를 여성으로만 한정했다는 점, 돌봄 제공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의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 비공식 노인 돌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을 각각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돌봄 제공 여부, 돌봄 제공 강도 등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의 차이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주된 방법론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종속변수)로는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를 모두 고려한다. 제5장에서는 비공식 돌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제2장), 현황분석(제3장, 제5장), 회귀분석(제4장)을 수행한다. 특히 제4장에서는 비공식 돌봄 제공 결정의 내생성 문

제를 완화, 추정치의 편의를 감소시켜 엄밀한 인과효과를 추정하고자 고정효과 모형을 주된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제5장에서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장기요양실태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강은나 외, 2022),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 「노인 실태조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정경희 외,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도로교통법」에서도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제2장 선행연구 검토³⁾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을 검토하며, 제2절에서는 비공식 노인 돌봄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문헌을 검토한다.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현황

노인에 대한 돌봄 실태를 살펴본 최근 연구로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가 있다(정경희 외, 2017).⁴⁾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 현황과 욕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노인 특성의 변화 추이를 예측함으로써 현재의 노인정책 및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요구되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경희 외, 2017, p.29).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현황을 살펴본다. 일상생활 수행능력⁵⁾

3) 본 장의 제2절과 제3절은 최경덕, 안태현(2019)을 수정·보완하였다.

4) 코로나19의 소비, 고용, 결혼과 출산,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시점인 2020년에 수행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8차 조사는 제외하고 1차(2006년)-7차(2018년) 조사를 활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제2장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시점 중 가장 최근인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5) 노인이 독립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옷 갈아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등)을 의미하며,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함께 노인의 신체 기능을 파악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이다.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⁶⁾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돌봄을 필요로 한다고 간주하기로 한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약 25.3%가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율은 남성(16.4%)에 비해 여성(31.9%)에게서, 80-84세(43.9%), 85세 이상(67.4%) 고연령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독거 가구 및 자녀동거 가구인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1〉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현황

(단위: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전체	25.3	-	-
성		배우자	
남성	16.4	유	17.8
여성	31.9	무	38.3
연령		가구형태	
65-69세	10.6	노인독거	33.8
70-74세	16.9	노인부부	18.2
75-79세	29.2	자녀동거	30.2
80-84세	43.9	기타	31.4
85세 이상	67.4	-	-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76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표 2-2〉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을 제시하였으며, 71.4%가 돌봄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9.4%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남성(93.5%), 유배우자(97.3%), 노인부부 가구(98.1%)

6) 기본적인 독립된 생활 이외에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몸단장하기, 가까운 거리 외출, 물건 사기, 전화 걸고 받기 등)을 의미한다.

및 자녀동거 가구(99.4%)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로부터 돌봄을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 19.0%, 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2〉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

(단위: %)

구분	수발률	수발자						
		가족			친척·이웃 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소계	동거	비동거				
전체	71.4	89.4	69.0	36.2	6.4	1.4	19.0	4.2
성								
남성	78.7	93.5	80.9	32.5	3.9	2.3	17.0	3.5
여성	68.7	87.7	63.8	37.8	7.5	1.1	20.0	4.5
연령								
65-69세	65.4	90.9	76.7	25.9	5.2	1.3	7.8	5.6
70-74세	60.6	93.5	82.1	29.8	6.1	1.1	11.8	3.8
75-79세	66.7	92.7	73.8	33.0	6.6	0.2	17.7	2.1
80-84세	73.6	87.2	62.3	40.3	8.0	2.1	20.7	5.3
85세 이상	85.9	86.0	60.5	43.3	5.3	2.0	27.7	4.5
배우자								
유	76.7	97.3	88.5	30.9	3.6	1.5	15.7	1.6
무	67.2	82.2	51.1	41.1	9.0	1.4	22.1	6.6
가구형태								
노인독거	50.6	65.4	0.0	65.4	17.6	2.7	23.6	11.8
노인부부	75.0	98.1	88.4	33.3	4.0	1.2	16.1	1.9
자녀동거	85.8	99.4	97.5	19.3	2.5	0.6	16.0	1.9
기타	93.7	72.2	49.2	40.9	1.5	3.0	34.6	3.8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4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표 2-3〉에는 가족, 친척·이웃·친구·지인으로부터 비공식 돌봄을 받은 경우의 돌봄 내용을 제시하였다. 청소·빨래·시장보기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이며, 외출동행은 57.4%, 식사준비는 62.0%,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는 30.0%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⁷⁾ 거의 매일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식사준비에서 45.4%로 가장 높았으며, 월 1회 이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외출동행에서 24.6%로 가장 높았다.

〈표 2-3〉 가족, 친척·이웃·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은 돌봄 내용

							(단위: %)
구분	도움 받음						도움받지 않음
	계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격주 1회	월 1회 이하	
청소·빨래·시장보기	76.5	38.1	17.5	13.2	4.1	3.6	23.5
외출동행	57.4	5.9	5.5	11.9	9.5	24.6	42.6
식사준비	62.0	45.4	6.4	5.3	2.9	1.9	38.0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	30.0	5.6	6.9	11.0	3.8	2.7	70.0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5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다음으로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이들에게 비공식 돌봄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빨래·시장보기(40.1%), 외출동행(27.9%), 식사준비(43.7%),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40.2%) 모두 배우자에 의한 도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출동행을 제외한 3가지 영역에서

7) 도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청소·빨래·시장보기에 대한 도움 제공의 양상이 노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부표 1〉에 제시하였다.

딸에 의한 도움 비율이 두 번째로 높으며, 아들(장남+차남 이하)보다 딸에 의한 도움 비율이, 아들보다 아들의 배우자(장남 배우자+차남 이하 배우자)에 의한 도움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표 2-4〉 비공식 돌봄을 제공한 자와 노인과의 관계별 돌봄 내용

(단위: %)

구분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친인척	이웃·친구	기타
청소·빨래·시장보기	40.1	9.7	12.3	5.6	4.2	23.1	3.6	1.2	0.2
외출동행	27.9	23.1	5.1	13.5	1.4	23.0	3.3	2.5	0.4
식사준비	43.7	5.6	13.8	3.8	4.0	23.9	3.7	1.0	0.4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	40.2	8.3	10.3	2.1	3.7	30.6	4.1	0.8	-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6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제2절 이론적 배경

경제학의 한 분야인 소비자이론은 주어진 제약 조건⁸⁾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행동을 주로 다룬다. 재화의 가격 변화는 소비자의 선택을 변화시키는데(가격효과, price effect), 소비자이론에서는 이를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나누어 설명한다.

두 가지 상품(재화1, 재화2)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재화2의 가

8) 일반적으로 소득을 의미한다.

격은 고정되어 있고 재화1의 가격만 변해도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면 재화1의 가격이 재화2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지므로 소비자는 재화1의 소비를 줄이고 재화2의 소비를 늘린다. 이를 대체효과라고 부른다. 한편, 명목소득이 불변인 상황에서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재화1이 정상재⁹⁾라면 소비자는 재화1의 소비를 줄인다. 이를 소득효과라고 부른다. 이 경우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소비가 감소하는 방향이므로,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재화1의 소비는 감소한다. 반면, 다른 조건은 동일하며 재화1이 열등재¹⁰⁾라면 재화1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로 인해 소비자는 재화1의 소비를 늘린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서로 반대 반향이므로, 재화1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재화1의 소비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활용하여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비시장시간(non-market time)을 감소시키는데,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돌봄 제공자의 비시장시간에 대한 가치가 상승한다. 이로 인해 돌봄 제공자가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인 유보임금이 상승하며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이 효과가 대체효과이다. 또한 비공식 돌봄은 돌봄과 관련된 제반 지출을 증가시켜 돌봄 제공자의 소득을 감소시킨다. 돌봄 제공자의 비시장시간을 정상재라고 가정하면, 비공식 돌봄에 따른 소득 감소는 노동공급 증가를 가져온다. 이 효과가 소득효과이다.

9)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10)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므로 비공식 돌봄에 따른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 증감 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경우는 비공식 돌봄으로 인해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며, 소득효과의 크기가 더 큰 경우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혹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의 크기가 유사하다면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Carmichael & Charles, 1998).

한편, 돌봄의 강도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에 상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고강도 돌봄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일과 돌봄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 있으나, 저강도 돌봄의 경우 돌봄 제공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 있다. 이는 돌봄의 강도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와의 상대적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Do, 2008). 고강도 돌봄은 비시장시간의 큰 감소와 함께 비시장시간에 대한 큰 폭의 가치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유보임금이 크게 상승하는 등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여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강도의 돌봄은 비시장시간에 대한 가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의 크기와 비슷하다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비공식 돌봄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guyen & Connelly, 2014). 성인 자녀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가장 일

반적인 돌봄의 형태 중 하나이며, 돌봄의 대상자인 노인들이 비공식 돌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Van Houtven & Norton, 2004). 한편, 독일 68%, 영국 80%, 캐나다 77%, 호주 83%, 한국 69% 등 비공식 돌봄 중 상당수는 64세 이하 연령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ber et al., 2005, p.110). 15-64세는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며, 이는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 연구들은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스스로를 돌봄 제공자라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약 40% 높으며(Carmichael & Charles, 2003a, p.784), 어머니에게 돌봄을 제공한다고 응답한 성인 자녀 중 여성의 비율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 자녀 중 여성의 비율에 비해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e & Van Houtven, 2009, p.997). 이 외 연구들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더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tone & Kemper, 1989; Amirkhanyan & Wolf, 2006; Johnson & Wiener, 2006 등).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분석의 대상을 돌봄 제공자가 여성인 경우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의 영역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들 중 대부분은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Ettner(1995), Pavalko & Artis(1997), Johnson & Lo Sasso(2006), Schmitz & Westphal(2017), 유럽의 사례를 살펴본

Carmichael & Charles(2003b), Michaud et al.(2010)(이상 영국), Moscarola(2010)(네덜란드), Casado-Marín et al.(2011)(스페인), Crespo & Mira(2014) 모두 비공식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에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반면, Wolf & Soldo(1994)는 기혼여성이 65세 이상인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여도 근로 여부 및 근로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Dautzenberg et al.(2000)은 근로하지 않으면 돌봄을 제공할 확률은 상승하지만, 돌봄 제공 여부가 여성의 근로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분석 대상을 여성으로 국한하지 않고 비공식 돌봄의 전반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한 연구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Meng(2013)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Ettner, 1996; Carmichael & Charles, 2003a; Heitmueller, 2007; Bolin et al., 2008; Leigh, 2010; Lilly, Laporte & Coyte, 2010; King & Pickard, 2013; Nguyen & Connelly, 2014; Stanfors, Jacobs & Neilson, 2019 등)

한편, 공적 돌봄 제도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들도 상당수 축적되어 있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혹은 혜택 확대는 대체로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Shimizutani, Suzuki & Noguchi, 2008; Sugawara & Nakamura, 2014; Geyer & Korfhage, 2015; 윤나영, 2022)

한국의 사례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서도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Do, 2008; 함선유, 2017; 류한별, 김가현, 2022).

비교적 최근 수행된 연구인 류한별, 김가현(2022)은 여성가족패널조사 1-7차 조사를 활용하여 성인 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여성의 근로 확률이 5.4%p 하락하였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 여성의 근로 확률이 1.8%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31-55세,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고졸 이하인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한별, 김가현, 2022, p.103).

Do(2008)와 함선유(2017)는 모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 중 Do(2008)는 1차 조사를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여성들에게서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주당 10시간 이상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이들의 근로 확률이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15.2%p 낮으며, 주당 1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근로 여성은 그렇지 않은 근로 여성에 비하여 시간당 임금이 1,650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Do, 2008, p.21). 또한, 1-5차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함선유(2017, p.296)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이상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4-7%p 감소시키며, 돌봄 제공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10%p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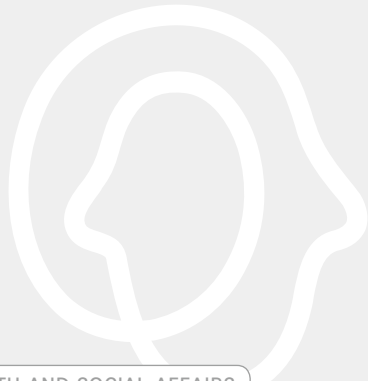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세 연구는 각각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류한별, 김가현(2022)은 비교적 최근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돌봄 제공자가 여성인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o(2008)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조사만 활용 가능한 시점에 연구가 수행되어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한 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함선유(2017)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5차 조사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다양한 방법(Pooled OLS, 시차변수 모형, 고정효과모형)으로 수행하였으나, 돌봄 제공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돌봄 제공의 효과가 이질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제공자의 특성에 따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를 활용한 패널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학력, 성별, 연령,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종사상지위, 돌봄 대상에 따른 돌봄 제공의 이질적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3장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제1절 데이터

제2절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비공식 돌봄 현황

제3장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제1절 데이터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¹¹⁾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살펴본 후,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구축된 자료로, ① 인구학적 배경, ② 가족, ③ 건강, ④ 고용, ⑤ 소득과 소비, ⑥ 자산, ⑦ 주관적 기대감 및 삶의 질 총 7개 영역에 대한 질문과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1962년 이전 출생자(2006년 기준 45세 이상) 10,254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상자들을 추적 조사하고 있는 패널 데이터이며, 격년 주기의 조사가 이루어져 현재는 2020년에 수행된 8차 조사까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8차 조사는 제외하고 1-7차 조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로

11)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제1장과 제4장에 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확산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같은 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여러 통계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바 코로나 19는 소비, 고용, 결혼과 출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코로나19의 대유행 이후 시점인 8차 조사(2020년)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¹²⁾은 65세 미만으로 한정하였다.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실제 은퇴 연령은 62.9세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12.01). 또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통상적 근로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65세 이하(또는 미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Ettner, 1995; Do, 2008; Leigh, 2010 외 다수).

본 연구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인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살펴보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해당 내용은 제4장과 제5장에서 주로 다룬다. 이에 앞서 제3장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제공하는 원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의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돌봄을 제공받는 가족 구성원의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12) 돌봄의 대상자가 아닌 (잠재적) 돌봄 제공자를 의미한다.

제2절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 분석

1.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먼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노인이 독립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기본적인 독립된 생활 이외에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신체 기능을 파악하는 데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이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가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10세 이상의 가족 중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란 ① 옷 갈아입기, ②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머리 감기, ③ 목욕 또는 샤워하기, ④ 차려놓은 음식 식사하기, ⑤ 이부자리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⑥ 화장실 이용하기, ⑦ 대소변 흘리지 않고 보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수행하시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누구인지 모두 말씀해주십시오’라는 질문¹³⁾과 이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며, 이를 활용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외에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비동거 가족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에 관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 수행능력과는 달리 가족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을 제공하지 않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가족에 대한 실제

13) 동 항목은 동거 가족과 비동거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돌봄 제공 여부에 대한 응답만을 제공한다. 이에,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과 관련된 문항은 돌봄 제공 현황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어머니(40.3%), 형제자매(15.8%), 배우자의 어머니(10.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형제자매(1.1%), 손자녀(0.4%), 자녀의 배우자(0.3%)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표 3-1〉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돌봄 필요 가족 여부〉		(단위: 관측치 수, %)
없음	있음	계
25,917 (94.6)	1,479 (5.4)	27,396 (100.0)

〈구성원별 돌봄 필요 가족 현황〉		(단위: 관측치 수, %)	
구성원	빈도(비율)	구성원	빈도(비율)
배우자	156 (9.7)	형제자매	255 (15.8)
어머니	652 (40.3)	배우자의 형제자매	17 (1.1)
아버지	142 (8.8)	자녀의 배우자	4 (0.3)
배우자의 어머니	176 (10.9)	손자녀	6 (0.4)
배우자의 아버지	57 (3.5)	기타 친인척	64 (4.0)
자녀	88 (5.4)	계	1,617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2. 돌봄 제공 현황

가. 돌봄 제공 여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는 상술한 바와 같이 가족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관련 문항을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나, 돌봄 제공 현황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관련 문항 모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은 ‘지난 1년 중 이분들 가운데 수발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비동거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현황은 ‘함께 살고 계신 가족 이외의 가족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10세 이상의 가족 중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쇠약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① 몸단장하기, ② 청소나 정리정돈, 침구정리 및 설거지 등, ③ 식사준비, ④ 빨래하기, ⑤ 가까운 거리 외출, ⑥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외출, ⑦ 물건 사기, ⑧ 금전관리, ⑨ 전화 걸고 받기, ⑩ 약 챙겨먹기)을 지난 1년 중 도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도와드린 분들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봄의 대상자를 가족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은 어머니(34.5%), 배우자(25.8%), 배우자의 어머니(13.9%)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은 어머니(44.2%), 배우자(14.4%), 아버지(11.1%) 순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이 둘을 모두 고려한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은 어머

34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니(37.5%), 배우자(22.3%), 배우자의 어머니(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는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3-2〉 돌봄 제공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가족 돌봄 제공 현황, A〉		(단위: 관측치 수, %)	
대상자	빈도(비율)	대상자	빈도(비율)
배우자	119 (25.8)	형제자매	19 (4.1)
어머니	159 (34.5)	배우자의 형제자매	0 (0.0)
아버지	39 (8.5)	자녀의 배우자	1 (0.2)
배우자의 어머니	64 (13.9)	손자녀	3 (0.7)
배우자의 아버지	17 (3.7)	기타 친인척	8 (1.7)
자녀	32 (6.9)	계	461 (100.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가족 돌봄 제공 현황, B〉		(단위: 관측치 수, %)	
대상자	빈도(비율)	대상자	빈도(비율)
배우자	30 (14.4)	형제자매	16 (7.7)
어머니	92 (44.2)	배우자의 형제자매	2 (1.0)
아버지	23 (11.1)	자녀의 배우자	2 (1.0)
배우자의 어머니	22 (10.6)	손자녀	3 (1.4)
배우자의 아버지	4 (1.9)	기타 친인척	3 (1.4)
자녀	11 (5.3)	계	208 (100.0)

〈돌봄 제공 현황, A + B〉		(단위: 관측치 수, %)	
대상자	빈도(비율)	대상자	빈도(비율)
배우자	149 (22.3)	형제자매	35 (5.2)
어머니	251 (37.5)	배우자의 형제자매	2 (0.3)

아버지	62 (9.3)	자녀의 배우자	3 (0.5)
배우자의 어머니	86 (12.9)	손자녀	6 (0.9)
배우자의 아버지	21 (3.1)	기타 친인척	11 (1.6)
자녀	43 (6.4)	계	669 (10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나. 돌봄 제공 강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 외에 제공된 돌봄의 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는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데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단위: 주당 평균 시간)’, ‘지난 1년 중 해당 가족 구성원을 수발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단위: 주)’라는 질문과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주당 평균 돌봄 시간과 돌봄 제공 기간을 파악하였다.

〈표 3-3〉에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모든 관측치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제공 기간의 평균값과 분포를 제시하였는데,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모든 관측치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36.0시간, 돌봄 제공 기간은 평균 44.1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과 돌봄 제공 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저강도라고 할 수 있는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이 10시간 이하인 경우는 38.6%이다.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20시간 초과 50시간 이하, 50시간 초과인 경우는 각각 15.3%, 23.3%, 22.9%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제공 기간이 10주 이하인 경우는 16.2%, 50주 초과인 경우는 61.4%이며, 특히 52주인 경우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3〉 돌봄 제공 강도(분포)

(단위: 시간, 주, %)

주당 평균 돌봄 시간	시간	돌봄 제공 기간	시간
평균(시간)	36.0	평균(주)	44.1
10시간 이하	38.6	10주 이하	16.2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15.3	10주 초과 20주 이하	8.6
20시간 초과 50시간 이하	23.3	20주 초과 50주 이하	13.9
50시간 초과	22.9	50주 초과	61.4
		52주	49.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표 3-4〉에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모든 관측치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제공 기간과 함께 〈표 3-2〉의 돌봄 제공 현황에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돌봄의 대상이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인 경우 각각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돌봄 제공 기간을 제시하였다.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모든 관측치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표 3-3〉과 동일하며, 대상자별로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배우자(45.4시간), 어머니(32.7시간), 배우자의 어머니(24.5시간) 순으로 길게 나타났으며, 돌봄 제공 기간은 배우자의 어머니(48.1주), 배우자(45.1주), 어머니(41.3주)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4〉 돌봄 제공 강도(대상자별)

(단위: 시간, 주)

대상자	주당 평균 돌봄 시간	대상자	돌봄 제공 기간
전체	36.0	전체	44.1
어머니	32.7	어머니	41.3
배우자	45.4	배우자	45.1
배우자의 어머니	24.5	배우자의 어머니	48.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추가로 <표 3-5>에는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 시간과 돌봄 제공 기간이 그 외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 검정(mean test)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돌봄 강도는 그 외 가족에 대한 돌봄 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배우자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 시간과 돌봄 제공 기간 모두 그 외 가족에 대한 돌봄과 비교하여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그 외 가족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 시간보다 11.3시간 짧았으나, 돌봄 제공 기간은 반대로 7.7주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돌봄 제공 강도(mean test)

(단위: 시간, 주)			
구분	어머니(A)	그 외(B)	차이(A-B)
주당 평균 돌봄 시간	32.7	35.0	-2.3
돌봄 제공 기간	41.3	41.6	-0.3
구분	배우자(A)	그 외(B)	차이(A-B)
주당 평균 돌봄 시간	45.4	30.2	15.2***
돌봄 제공 기간	45.1	40.1	4.0**
구분	배우자의 어머니(A)	그 외(B)	차이(A-B)
주당 평균 돌봄 시간	24.5	35.8	-11.3**
돌봄 제공 기간	48.1	40.4	7.7**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제3절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비공식 돌봄 현황

제2절에서는 전체 관측치 또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관측치를 대상으로 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현황, 돌봄 제공 현황(돌봄 제공 여부, 돌봄 제공 강도)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파악한다.

〈표 3-6〉에는 본 연구의 제4장 제3절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을 활용하여 평균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비율은 각각 1.8%, 2.2%로,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비율은 여성에게서 0.4%p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비율은 1.9%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3.0%)에 비하여 1.1%p 낮았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변수들로는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를 고려하였는데, 이 중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이상'인 경우의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비율은 1.6%로, '보통 이하'인 경우(2.4%)에 비하여 0.8%p 낮았다. 이 외에 대도시(2.3%)에서의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비율이 그 외 지역(1.8%)에서 보다 0.5%p 높게 나타났다.

〈표 3-6〉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mean test)

(단위: %, %p)			
구분	돌봄 제공 비율(A)	돌봄 제공 비율(B)	차이(A-B)
성별	남성 1.8	여성 2.2	-0.4**
연령	55세 이상 2.0	55세 미만 2.0	0.0
배우자	유 1.9	무 3.0	-1.1***
학력	대졸 이상 2.0	고졸 이하 2.0	0.0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이상 1.6	보통 이하 2.4	-0.8***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여부	유 2.6	무 2.0	0.6
만성질환	유 2.1	무 1.9	0.2
거주 지역	대도시 2.3	그 외 1.8	0.5***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표 3-7〉에는 〈표 3-6〉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남성의 비율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38.9%, 제공하지 않은 경우 44.3%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5.4%p 낮았다. 유배우자 비율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각 82.5%, 88.6%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유의하게 6.1%p 낮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음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75.3%)에 10.4%p 낮았으며, 대도시 거주 비율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53.3%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7.0%p 높았다. 반면,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연령, 학력,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만성질환 유병률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40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표 3-7〉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특성(mean test)

구분	돌봄 제공(A)	돌봄 미제공(B)	(단위: %, %p)
			차이(A-B)
성별(남성 비율)	38.9	44.3	-5.4**
연령(55세 이상 비율)	62.5	63.3	-0.8
배우자(유배우자 비율)	82.5	88.6	-6.1***
학력(대졸 이상 비율)	16.0	15.9	0.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이상 비율)	75.3	85.7	-10.4***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비율	7.5	5.8	1.7
만성질환 유병률	42.5	39.8	2.7
거주 지역(대도시 비율)	53.3	46.3	7.0***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제4장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4절 소결

제4장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¹⁴⁾

제4장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제1절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제3절에서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론과 변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 제3절에서는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제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¹⁵⁾에서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점, 관련법 등에서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제1절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제1절에서는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살펴본다. 먼저, <표 4-1>에는 제4장 제3절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에 종속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이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조사별(wave)로 해당 값들을 제시하였다.

14) 본 장은 최경덕, 안태현(2019)을 수정·보완하였다.

15) 특히 본 연구의 제4장을 의미한다.

〈표 4-1〉 A열에는 조사 대상자들의 근로 비율을 제시하였다. 현재 근로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을 제공한 경우 평균 50.7%, 제공하지 않은 경우 평균 60.8%로,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10.1%p 낮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B열에는 조사 대상자들의 조사시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을 제시하였다. 돌봄을 제공한 경우의 연간 근로기간은 평균 6.0개월,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연간 근로기간은 평균 7.0개월로,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1.0개월 짧았으며,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C열과 D열에는 현재 근로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일수를 제시하였다.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근로일수는 돌봄을 제공한 경우 각각 46.6시간, 5.6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각각 46.4시간, 5.5일로 나타나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근로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의 월소득과 시간당 소득을 E열과 F열에 제시하였다. 돌봄을 제공한 경우의 월소득은 평균 187.9만 원으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40만 원 낮게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은 돌봄을 제공한 경우 평균 1.0만 원, 제공하지 않은 경우 평균 1.4만 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자의 경제상태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0-100점 사이의 값을 10점 단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돌봄을 제공한 경우 경제상태 만족도는 평균 47.8점,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평균 56.4점으로 나타나 돌봄을 제공한 경우의 경제상태 만족도가 10점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시점에서 동일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G열의 이러한 결과는 돌봄을 제공한 경우의 근로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 A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월소득, 경제상태 만족도는 모두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단위: %, 주, 시간, 일, 만 원)

〈근로 여부, A〉

구분	2006 (1차)	2008 (2차)	2010 (3차)	2012 (4차)	2014 (5차)	2016 (6차)	2018 (7차)	평균
돌봄 제공	45.5	50.9	55.8	53.5	50.0	61.8	44.4	50.7
돌봄 미제공	53.4	60.3	62.5	60.7	66.2	64.9	63.8	60.8

〈연간 근로기간, B〉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5.6	5.9	6.2	6.6	6.0	7.3	5.6	6.0
돌봄 미제공	6.2	6.7	7.1	7.0	7.8	7.7	7.5	7.0

〈주당 근로시간, C〉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48.3	51.9	44.9	44.3	42.4	38.2	43.6	46.6
돌봄 미제공	48.9	49.1	47.0	46.5	45.2	42.7	42.5	46.4

〈주당 근로일수, D〉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5.7	5.9	5.5	5.2	5.4	5.5	5.7	5.6
돌봄 미제공	5.6	5.6	5.5	5.5	5.4	5.4	5.3	5.5

〈월소득, E〉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168.0	186.0	155.9	174.3	211.9	252.7	357.1	187.9
돌봄 미제공	187.1	195.7	207.9	212.4	279.6	279.6	274.8	229.0

46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시간당 소득, F〉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0.9	0.9	0.9	1.0	1.2	1.6	2.6	1.0
돌봄 미제공	1.1	1.0	1.2	1.2	1.6	1.9	1.8	1.4

〈경제상태 만족도, G〉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평균
돌봄 제공	45.2	46.4	51.0	48.1	47.4	55.0	49.4	47.8
돌봄 미제공	51.1	53.9	56.3	58.7	59.1	61.2	60.8	5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제시한 〈표 4-1〉의 결과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먼저, 돌봄을 제공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의 상관관계에 그치지 않고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인과관계)까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에는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종속변수로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평균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은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거나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표 4-2〉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mean test)

(단위: %, %p)

구분	돌봄 제공(A)	돌봄 미제공(B)	차이(A-B)
근로 여부	50.7	60.8	-10.1***
연간 근로기간	6.0	7.0	-1.0***
주당 근로시간	46.6	46.4	0.2
주당 근로일수	5.6	5.5	0.1*
월소득	187.9	229.0	-41.1*
시간당 소득	1.0	1.4	-0.4*
경제상태 만족도	47.8	56.4	-8.6***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표 4-3〉에서는 근로 여부와 돌봄 제공 여부에 관해 조사 시점을 고려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기(t)와 지난 기(t-1)의 근로 여부를 바탕으로 총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① 지난 기와 이번 기 모두 근로, ② 지난 기 미근로, 이번 기 근로, ③ 지난 기 근로, 이번 기 미근로, ④ 지난 기와 이번 기 모두 미근로로 구분¹⁶⁾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표 4-3〉에서는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근로 여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6)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이번 기	
		근로	미근로
지난 기	근로	①	③
	미근로	②	④

분석은 상술한 총 네 가지 그룹 중 두 그룹을 선택하여 두 그룹에서 각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① 지난 기와 이번 기 모두 근로하는 경우, ③ 지난 기에 근로하고 이번 기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의 두 그룹을 선택하여 두 그룹 중 각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¹⁷⁾ 지난 기와 이번 기 모두에 근로하는 비율($①/①+③$)은 돌봄을 제공한 경우 79.2%, 제공하지 않은 경우 88.8%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9.6%p 더 높게 나타났으며, 1% 수준에서 유의하여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다음으로, ③ 지난 기에 근로하고 이번 기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④ 지난 기와 이번 기 모두 근로하지 않는 경우의 두 그룹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지난 기에 근로하고 이번 기에 근로하지 않는 비율(근로를 중단하는 비율, $③/③+④$)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 26.0%로 나타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18.6%)에 비하여 7.4%p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표 4-1>, <표 4-2>와 유사하게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미근로 혹은 근로 중단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③을 포함하지 않고 ①과 ② 또는 ②와 ④를 비교하면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7) 즉,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①/①+③$ 과 $③/①+③$ 을 살펴본다.

〈표 4-3〉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 여부에 따른 근로 여부 변화 양상(mean test)

(단위: %, %p)

분석 집단	돌봄 제공(A)	돌봄 미제공(B)	차이(A-B)
① 지난 기, 이번 기 모두 근로	79.2	88.8	9.6***
③ 지난 기 근로, 이번 기 미근로	20.8	11.2	
③ 지난 기 근로, 이번 기 미근로	26.0	18.6	-7.4**
④ 지난 기, 이번 기 모두 미근로	74.0	81.4	
① 지난 기 이번 기 모두 근로	88.4	90.4	2.0
② 지난 기 미근로, 이번 기 근로	11.6	9.6	
② 지난 기 미근로, 이번 기 근로	14.9	16.2	1.3
④ 지난 기, 이번 기 모두 미근로	85.1	83.4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근로 여부와 비공식 돌봄 간의 관련성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활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외에 다른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류한별, 김가현(2022)은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2007년)-7차(2018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 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동 연구에 따르면,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통해 살펴본 20-65세 여성의 근로 확률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상이하였다.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 확률은 55.9%로, 그렇지 않은 경우(51.9%)에 비하여 4%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한별, 김가현, 2022, p.106).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근로를 중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표 4-2〉, 〈표 4-3〉에서 확인하였으며, 이상을 바탕으로 제2절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돌봄이 근로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2절 실증분석 방법론 및 변수 구성

1. 실증분석 방법론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 Model, FE)이다.

$$L_{it} = \beta_1 C_{it} + X_{it} \Gamma_0 + \alpha_i + \epsilon_{it}$$

종속변수인 L_{it} 는 조사 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의미하며,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를 고려하였다. 관심변수인 C_{it} 는 조사 대상자 i 의 t 시점에서의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돌봄 제공 여부를 의미하며, β_1 는 C_{it} 가 L_{it} 에 미치는 효과를 포착한다. 또한, X 는 조사 대상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를, α 는 조사 대상자 i 의 개인 고정효과, ϵ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통제변수들은 관측 가능한 개인의 여러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에 관심변수인 돌봄 제공 여부와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측 불가능한 개별적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중 하나로 근로를 통한 성취 및 자아실현의 정도를 들 수 있다. 정미현, 신미아(2006, p.172), 이정숙, 강기정(2015, p.34)은 연구 대상자들의 취업 동기 중 자아실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2.3%, 34.2%로 상당한 수준임을 언급하였으며, 이보라, 송수진, 지수인, 강정훈(2019, p.186)은 취업 동기와 자아실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상관계수 = 0.49)을 언급하였다. 즉, 근로를 통한 성취 및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으며,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다른 예로는 개인의 능력 및 자질을 들 수 있다. 능력 및 자질이 타인에 비해 우수한 사람은 근로 확률 및 소득이 높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식 돌봄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예로 든 근로를 통한 성취 및 자아실현의 정도, 개인의 능력 및 자질은 측정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데, 회귀분석 시 해당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하면 OLS(Ordinary Least Square) 분석은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변수들의 시간에 따른 변동성 파악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의 이점을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관측이 불가능한 시간 불변 개별적 특성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정치의 편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과효과를 엄밀히 추정하고자 고정효과 모형을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하였다.

2. 변수 구성

가. 돌봄 제공(관심변수)

제4장 회귀분석의 관심변수는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이다. 해당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제3장 제2절

에 명시되어 있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질문과 응답(지난 1년 중 이분들 가운데 수발해 주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누구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관련 질문과 응답(함께 살고 계신 가족 이외의 가족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10세 이상의 가족 중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쇠약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을 지난 1년 중 도와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도와드린 분들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을 활용하였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게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경우 1, 10시간 이하의 돌봄을 제공하였거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는 관련 연구들에서도 1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수인 점(Carmichael & Charles, 2003a; Leigh, 2010; King & Pickard, 2013 등), 주당 10시간 이하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 상대적으로 저장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종속변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를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근로 여부는 1(현재 근로한다고 응답한 경우) 또는 0(그렇지 않은 경우)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다. 연간 근로기간은 각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근로한 개월 수를 나타내며, 0부터 12 사이의 정수값을 갖는다. 월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세후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순수입을 활용하였으며, 시간당 소득은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세후 소득)/(주당 근로시간×4.3), 자영업자는 (월평균 순수입)/(주당 근로시간×4.3)으로 산출하였다.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는 모든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변수를 생성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및 시간당 소득은 근로한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로 한정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다. 통제변수

비공식 돌봄 제공 여부 외에 조사 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진 특성들을 관련 연구들을 참고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 연령,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을 모두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별 시간효과를 고려하고자 조사별 가변수를 포함하였으며,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4>에 제시하였다.

<표 4-4> 통제변수 생성

변수명	변수 생성
성별	남성인 경우 1, 여성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연령	연령항, 연령 제곱항 포함(연속변수)
배우자 여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학력	대졸 이상인 경우 1, 고졸 이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자가 소유 여부	자가를 소유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개인총소득이 조사별(wave)로 평균 이상인 경우 1, 평균 미만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자녀 수	자녀 수(연속변수)

변수명	변수 생성
주관적 건강상태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좋음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1, 보통 이하라고 응답한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본인의 ADL 또는 IADL 제한 여부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만성질환 여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지역	대도시(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이면서 동부)인 경우 1, 그 외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주: 저자 작성

3. 기초통계량

제3절에서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표 4-5>에는 회귀분석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며,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근로일수의 평균값은 각각 7.0개월, 46.4시간, 5.5일로 나타났다. 월소득과 시간당 소득의 평균은 228.4만 원, 1.3만 원이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평균 56.3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년 중 65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에게 주당 평균 1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동 비율은 주당 돌봄 제공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1.8%로 상승한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의 비율은 44.2%, 평균 연령은 56.2세이며, 유배우자 비율과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88.5%, 15.9%로 나타났다.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80.1%, 근로소득 제외 개인 총소득은 평균 284.4만 원이며,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좋음 이상이라고 간주하는 비율,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48.5%, 39.9%로 나타났다.

〈표 4-5〉 기초통계량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근로 여부					
근로	16,608(60.6%)				
근로하지 않음	10,788(39.4%)				
연간 근로기간(단위: 월)	27,123	7.0	5.8	0	12
주당 근로시간(단위: 시간)	16,475	46.4	16.1	1	126
주당 근로일수(단위: 일)	16,474	5.5	1.1	1	7
월소득(단위: 만 원)	14,822	228.4	344.7	0	16,000
시간당 소득(단위: 만 원)	14,815	1.3	2.4	0	116.3
경제상태 만족도	27,392	56.3	20.6	0	100

[관심변수]

돌봄 제공 여부(기준점: 10시간)

제공	300(1.1%)				
제공하지 않음	27,096(98.9%)				

[통제변수]

성별

남성 12,095(44.2%)

여성 15,301(55.9%)

연령 27,396 56.2 5.0 45 64

배우자 여부

배우자 유 24,243(88.5%)

배우자 무 3,153(11.5%)

학력

고졸 이하 23,028(84.1%)

대졸 이상 4,368(15.9%)

자가 소유 여부

자가 21,952(80.1%)

그 외 5,444(19.9%)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단위: 만 원) 27,396 284.4 829.4 0 40,580

자녀 수 27,396 2.2 0.9 0 8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관적 건강상태					
좋은 이상	13,278(48.5%)				
보통 이하	14,118(51.5%)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유	1,597(5.8%)				
무	25,799(94.2%)				
만성질환 여부					
유	10,930(39.9%)				
무	16,466(60.1%)				
지역					
대도시	12,726(46.5%)				
그 외	14,670(53.6%)				

주: 통제변수의 관측치는 모두 27,39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제3절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3절에서는 제1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1.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4-6>에 OLS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돌봄 제공은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월소득, 시간

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할 확률은 8.7%p 낮으며, 연간 근로기간이 약 0.7개월 짧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근로하는 경우의 월소득과 시간당 소득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하는 경우에 비하여 약 33만 원, 0.2만 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약 6.8점 낮았다. 이 외 OLS 분석에 포함된 모든 통제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는 <부표 2>에 제시하였다.

<표 4-6>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연관성(OLS)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돌봄 제공	-0.087*** (0.031)	-0.662* (0.364)	-1.363 (1.806)	0.095 (0.108)	-32.911*** (10.862)	-0.214** (0.089)	-6.822*** (1.279)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대상자 수	6,972	6,971	4,731	4,732	4,390	4,386	6,972
R-squared	0.232	0.239	0.035	0.031	0.086	0.060	0.215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표 4-6>에 제시된 추정치들은 조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들이 통제된 회귀분석의 결과이나, 제2절에서 언급한 근로를 통한 성취 및 자아실현의 정도, 개인의 능력 및 자질 등을 포함한 관측 불가능한 개별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표 4-7>에는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시간 불변 이질성을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치

를 제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 추정치는 OLS 분석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1%p,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6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 종속변수의 평균값(60.6%, 7.0개월, 56.3점)을 고려하면, 각각 13.4%, 10.1%, 4.6% 감소하는 수준이다.¹⁸⁾¹⁹⁾

제2장 제2절에서는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체효과(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비시장시간에 대한 가치와 유보임금을 상승시키며, 이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와 소득효과(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며, 비시장시간을 정상재라고 가정하는 경우 이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돌봄 제공자의 노동공급 증감 여부가 결정된다. <표 4-7>의 (1)열과 (2)열에서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증적으로 대체효과의 크기가 소득효과의 크기보다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및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돌봄 제공자들은 근로 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8)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 <표 4-7>의 결과는 기존 문헌들의 주요 결과와 일치한다(Pavalko & Artis, 1997; Carmichael & Charles, 2003a, 2003b; Johnson & Lo Sasso, 2006; Heitmueller, 2007; Bolin et al., 2008; Casado-Marín et al., 2011 외 다수).

19) 경제상태 만족도와 관련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제공이 경제상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효과 외에 돌봄 제공이 근로 확률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상태 만족도가 하락하는 간접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는 돌봄 제공 여부 외에 조사 대상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근로 확률 및 연간 근로기간은 건강 관련 지표들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졌는데, 주관적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 본인의 ADL 또는 IADL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에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경제상태 만족도는 주로 연령, 자가 소유 여부, 소득 등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부표 3>에는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우울감, 모임 참여, 가까운 지인 만남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3.7%)와 우울감(11.3%)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FE)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돌봄 제공	-0.081*** (0.025) [-13.4]	-0.710*** (0.272) [-10.1]	-0.926 (1.788) [-2.0]	0.032 (0.105) [0.6]	-11.038 (7.167) [-4.8]	-0.030 (0.103) [-2.2]	-2.591** (1.183) [-4.6]
연령	0.057*** (0.012)	0.687*** (0.150)	-0.105 (0.667)	0.001 (0.040)	23.747** (11.863)	0.073 (0.090)	1.267** (0.579)
연령 제곱	-0.001*** (0.000)	-0.006*** (0.001)	-0.005 (0.006)	-0.000 (0.000)	-0.190* (0.110)	-0.000 (0.001)	-0.006 (0.005)
배우자 여부	-0.047* (0.026)	-0.369 (0.331)	1.478 (1.478)	0.013 (0.084)	7.308 (6.594)	0.061 (0.072)	1.127 (1.203)
학력(ref: 고졸 이하)	-0.004 (0.080)	-0.160 (0.799)	0.008 (3.315)	0.192 (0.166)	-314.543 (357.017)	-0.995 (1.515)	6.702** (3.348)
자가 소유 여부	-0.026** (0.012)	-0.258* (0.136)	-0.327 (0.685)	-0.041 (0.040)	16.009 (12.458)	0.017 (0.075)	4.955*** (0.699)

60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0.085*** (0.006)	-1.134*** (0.080)	-0.481 (0.363)	-0.044** (0.022)	6.481 (12.224)	0.071 (0.071)	0.771*** (0.293)
자녀 수	0.054** (0.027)	0.168 (0.372)	0.236 (1.411)	-0.077 (0.076)	9.898 (9.219)	0.020 (0.089)	0.233 (1.152)
주관적 건강상태 (ref: 보통 이하)	0.028*** (0.006)	0.281*** (0.065)	0.108 (0.283)	0.003 (0.018)	9.169* (5.369)	0.056 (0.040)	3.007*** (0.282)
ADL/IADL 제한 여부	-0.049*** (0.013)	-0.535*** (0.140)	-0.976 (0.778)	-0.041 (0.053)	-15.011 (10.255)	-0.005 (0.088)	-2.601*** (0.610)
만성질환 여부	-0.037*** (0.012)	-0.560*** (0.138)	-1.532*** (0.587)	-0.069* (0.036)	7.701 (6.250)	0.121* (0.064)	-0.910* (0.495)
지역(ref: 대도시 외)	0.024 (0.031)	0.613* (0.355)	1.727 (1.424)	-0.006 (0.093)	65.059 (47.338)	0.403 (0.338)	0.389 (1.592)
상수항	-0.970*** (0.348)	-11.266*** (4.209)	63.956*** (18.467)	6.595*** (1.094)	-526.355* (294.913)	-1.925 (2.316)	-4.740 (16.465)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대상자 수	6,972	6,971	4,731	4,732	4,390	4,386	6,97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주: 1. 조사별 가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성별을 통제하였으나 시간 불변 변수이므로 계수 추정치가 보고되지 않음

2. 소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추정치의 % 변화분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표 4-7〉에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일치추정량을 얻고자 하였으나, 돌봄 제공과 관련하여 여전히 내생성 문제가 일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중 하나로 역의 인과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돌봄 제공자가 일과 돌봄의 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로 결정(돌봄 제공 여부 → 노동시장 참여 여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반대로 근로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하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돌봄을 제공하기로 결정(노동시장 참여 여부 → 돌봄 제

공 여부)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관측이 불가능한 시간 가변(time varying) 개별적 특성들에 기인하는 편의가 일정 부분 존재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관심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 IV)를 활용하여 추정치의 편의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심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의심되어 도구변수를 활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관심변수가 외생적이라면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등 비효율적 추정량을 얻게 된다.

따라서, 관심변수의 내생성을 검정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활용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은 서로 다른 회귀분석에서 얻은 두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구변수 사용 여부에 따른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정 결과 두 추정치 간 유의한 차이가 없다면 관심변수가 외생적, 두 추정치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관심변수가 내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도구변수에 관해 간략히 논의한다. 본 연구에 적합한 실증분석 방법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도구변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여부다. 해당 변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생성하였다. 유효한 도구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변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relevance condition), 오직 관심변수를 통해서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exogeneity condition), 두 조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여부는 돌봄 제공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 여부 그 자체가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돌봄 제공이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① OLS와 IV, ② 고정효과 모형(FE)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FE-IV)에 대하여 각각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다. <표 4-8>에는 IV, FE-IV의 1단계 추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18.2%p, 16.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도구변수의 설명력은 F 통계치를 기준으로 235.35, 197.44로 높게 나타났다.

<표 4-8> IV, FE-IV의 1단계 추정(first stage regression) 결과

	IV		FE-IV	
	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돌봄 필요 가족 여부	0.182***	(0.012)	0.164***	(0.012)
성별	-0.005***	(0.001)	-	-
연령	0.003	(0.003)	0.004	(0.003)
연령 제곱	-0.000	(0.000)	-0.000	(0.000)
배우자 여부	0.001	(0.003)	0.018**	(0.008)
학력(ref: 고졸 이하)	0.001	(0.002)	-0.009	(0.013)
자가 소유 여부	-0.001	(0.002)	-0.000	(0.003)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0.003**	(0.002)	0.002	(0.002)
자녀 수	-0.001*	(0.001)	-0.003	(0.006)
주관적 건강상태(ref: 보통 이하)	-0.002	(0.001)	-0.001	(0.002)
ADL/IADL 제한 여부	0.005	(0.003)	0.004	(0.005)
만성질환 여부	-0.002	(0.002)	-0.001	(0.003)
지역(ref: 대도시 외)	0.003*	(0.001)	0.003	(0.006)
상수항	-0.097	(0.078)	-0.120	(0.082)
관측치	27,396		27,396	
R-squared	0.159		0.154	
F-statistics(excluded instrument)	235.35		197.44	

주: 1. 조사별 가변수를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상술한 바와 같이 두 경우 모두 도구변수의 설명력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OLS와 IV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두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반면,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하우스만 검정 결과는 두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일치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 패널 분석 시 도구변수 활용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검정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관측되지 않는 시간 불변 개별적 특성들을 제거하게 되면 여타 요인들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을 의미한다. 동 검정 결과에 근거하여 돌봄 제공자의 특성 및 돌봄 대상에 따른 돌봄 제공의 효과도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돌봄 제공자의 특성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표 4-7〉의 고정효과 모형 분석에서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를 하락시킴을 확인하였다. 동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특성과 무관히 돌봄 제공이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여러 요인에 따라 돌봄 제공의 효과가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 중 Dentinger & Clarkberg(2002), King & Pickard(2013), 함선유(2017)는 성별, 류한별, 김가현(2022)은 연령에 따른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학력, 성별, 연령 등 개인 특성과 가구 소득,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 종사상 지위에 따른 돌봄 제공의 이질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가.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별 분석

먼저, <표 4-9>에는 학력, 성별, 연령 등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돌봄 제공의 이질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A열과 B열에는 조사 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돌봄 제공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고졸 이하에서는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각각 8.3%p (14.2%), 약 0.7개월(9.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졸 이상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약 7.1시간(16.0%)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즉,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졸 이하의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졸 이상은 노동공급을 지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 돌봄 제공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소득이 될 것이다. 기회비용의 크기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과 노동공급을 병행할 것인지, 혹은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에 전념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회비용이 클수록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과 노동공급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학력별 월 급여액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196.2만 원, 고졸 247.6만 원, 초대졸 300.8만 원, 대졸 382.8만 원, 대학원졸 526.7만 원으로 나타났다²⁰⁾(KOSIS, 2022a).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고졸 이하 집단에서의 노동시장 이탈이 빈번

20) 월 급여액 외에 시간당 임금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확인하였다.

할 수 있다.

〈표 4-9〉 C열과 D열에는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돌봄 제공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돌봄 제공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효과의 크기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의 감소 폭은 여성(6.9%p, 약 0.6개월)에 비해 남성(9.4%p, 약 0.8개월)에게서 크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의 평균값을 고려하면, 돌봄 제공은 남성의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을 각각 11.7%, 8.1%, 여성의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을 각각 15.3%, 12.4% 감소시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인 돌봄 제공자에게서는 경제상태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약 3.6점(6.5%)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표 4-9〉의 C열과 D열의 결과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기준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 연령대에서 남성은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여성은 전업주부로서 가구 내 돌봄 등을 전담하는 것이 드물지 않은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가적 소득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돌봄에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안미영(2022), Do(2008)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한 안미영(2022)은 돌봄노동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비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Do(2008)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이 여성의 근로 확률을 하락시키지만 남성에게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돌봄 제공의 이질적 효과는 E열과 F열에 제시하였으며, 55-64세에서만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55-64세인 조사 대상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 확률은 7.4%p(13.3%), 연간 근로기간은 약 0.6개월(10.0%), 경제상태 만족도는 약 2.8점(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55-64세는 45-54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돌봄의 대상자(돌봄의 피제공자)가 고연령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커서 돌봄 제공자가 돌봄 제공과 노동공급을 병행하기 보다는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55-64세는 45-54세와 비교하여 법률에 명시된 정년²¹⁾까지 남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정년 도달시까지 기대되는 소득이 낮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가족 돌봄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9〉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학 력	[A] 대졸 이상	-0.065 (0.045) [-9.1]	-0.935* (0.547) [-11.2]	-7.070** (3.059) [-16.0]	-0.017 (0.123) [-0.3]	-12.489 (22.141) [-3.4]	0.380 (0.348) [17.2]	-2.292 (2.896) [-3.6]
	관측치	4,350	4,318	3,094	3,093	2,952	2,952	4,349
	R-squared	0.081	0.086	0.038	0.026	0.015	0.020	0.033
	[B] 고졸 이하	-0.083*** (0.028) [-14.2]	-0.667** (0.303) [-9.9]	0.821 (2.061) [1.8]	0.045 (0.131) [0.8]	-11.427 (7.091) [-5.9]	-0.136* (0.081) [-12.0]	-2.607** (1.281) [-4.8]
	관측치	23,046	22,805	13,381	13,381	11,870	11,863	23,043

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R-squared		0.031	0.026	0.053	0.033	0.005	0.021	0.051
성 별	[C] 남성	-0.094*** (0.031) [-11.7]	-0.759** (0.355) [-8.1]	0.391 (2.337) [0.8]	0.089 (0.147) [1.6]	-15.437 (10.640) [-5.7]	-0.119 (0.097) [-7.7]	-0.574 (1.797) [-1.0]
	관측치	12,095	12,012	9,693	9,693	9,380	9,375	12,092
	R-squared	0.057	0.057	0.036	0.028	0.011	0.019	0.048
	[D] 여성	-0.069** (0.034) [-15.3]	-0.630* (0.376) [-12.4]	-2.518 (2.705) [-5.5]	-0.023 (0.135) [-0.4]	-6.568 (9.615) [-4.2]	0.070 (0.194) [7.0]	-3.600** (1.489) [-6.5]
	관측치	15,301	15,111	6,782	6,781	5,442	5,440	15,300
	R-squared	0.029	0.025	0.070	0.040	0.008	0.020	0.047
	[E] 45-54세	0.008 (0.042) [1.2]	0.143 (0.449) [1.8]	0.507 (3.031) [1.1]	-0.002 (0.143) [-0.4]	-4.394 (8.031) [-1.8]	-0.022 (0.061) [-1.6]	0.453 (2.206) [0.8]
	관측치	10,066	9,960	6,883	6,880	6,247	6,243	10,064
연 령	R-squared	0.017	0.011	0.014	0.013	0.022	0.013	0.041
	[F] 55-64세	-0.074** (0.031) [-13.3]	-0.647** (0.306) [-10.0]	-0.377 (2.508) [-0.8]	-0.023 (0.149) [-0.4]	0.591 (12.396) [0.3]	0.031 (0.170) [2.3]	-2.824* (1.491) [-5.0]
	관측치	17,330	17,163	9,592	9,594	8,575	8,572	17,328
	R-squared	0.042	0.042	0.038	0.024	0.003	0.017	0.026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소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추정치의 % 변화분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나.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별 분석

다음으로 가구 소득, 가구원 수 등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표 4-10>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²²⁾ A열과 B열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른 돌봄 제공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가구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 확률은 9.8%p(15.7%), 연간 근로기간은 약 0.9개월(12.4%) 감소하며,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확률이 약 6.9%p(11.7%) 감소하였다.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표 4-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구 소득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노동공급 감소 및 이로 인한 소득의 감소가 가구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구 소득과 음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부연하자면, 가구 소득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잠재적 돌봄 제공자의 소득을 제외하더라도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가구 소득이 평균 미만인 가구에 비하여 높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돌봄 제공자가 근로 지속 여부 및 근로 시간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탄력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가구 소득이 평균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 생계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 쉽지 않아 돌봄 제공과 근로를 병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가구원 중 2명 이상 근로 중인 가구의 비율이 소득이 평균 미만인 가구보다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표 4-10>의 결과는 소득이 평균 이

22) <표 4-10>의 가구 소득 및 가구원 수는 돌봄 제공에 대한 의사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추정치 해석 시 일정 부분 주의할 기울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인 다인 근로자 가구에서 가구원 중 일부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0〉의 C열과 D열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돌봄 제공의 이질적 효과를 살펴본다. 가구원 수는 4명 이하 또는 5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4명 이하인 경우에 효과가 두드러졌다. 가구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7.4%p(12.3%), 연간 근로기간을 약 0.6개월(8.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각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할 확률이 감소하거나 혹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 가구원의 역할 수행과 이로 인한 부담감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즉, 가구원 수와 돌봄 제공으로 인한 각 가구원의 부담의 정도는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노동공급을 지속할 가능성은 가구원 수가 적은 경우에 비하여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한편, 가구원 수를 〈표 4-10〉과 달리 3명 이하 또는 4명 이상으로도 구분하여 가구원 수와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성 간 연관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 경우에도 가구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근로 확률이 8.3%p 하락하지만($p = 0.008$),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확률에 변화가 없었다.²³⁾

23)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계수 추정치가 -0.055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 = 0.256$).

〈표 4-10〉 조사 대상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가 구	[A] 평균 이상	-0.098** (0.040)	-0.901** (0.354)	-0.812 (2.392)	0.145 (0.148)	-21.716 (14.527)	-0.017 (0.188)	-3.111 (1.973)
		[-15.7]	[-12.4]	[-1.7]	[2.6]	[-8.6]	[-1.2]	[-5.1]
	관측치	12,838	12,724	7,958	7,960	7,199	7,197	12,836
	R-squared	0.048	0.042	0.048	0.036	0.021	0.022	0.027
소 득	[B] 평균 미만	-0.069** (0.032)	-0.560 (0.379)	-0.972 (2.615)	-0.067 (0.141)	-2.343 (6.105)	-0.052 (0.095)	-2.104 (1.499)
		[-11.7]	[-8.3]	[-2.1]	[-1.2]	[-1.1]	[-4.2]	[-4.0]
	관측치	14,558	14,399	8,517	8,514	7,623	7,618	14,556
	R-squared	0.030	0.029	0.051	0.029	0.008	0.021	0.077
가 구 원	[C] 4명 이하	-0.074*** (0.026)	-0.610** (0.293)	-0.674 (1.965)	0.064 (0.103)	-5.023 (8.388)	-0.028 (0.127)	-1.822 (1.364)
		[-12.3]	[-8.8]	[-1.5]	[1.2]	[-2.2]	[-2.1]	[-3.2]
	관측치	24,649	24,402	14,755	14,756	13,280	13,273	24,646
	R-squared	0.032	0.029	0.047	0.031	0.006	0.017	0.046
수	[D] 5명 이상	-0.037 (0.074)	-0.490 (0.817)	-0.024 (5.192)	-0.268 (0.384)	-0.164 (15.675)	0.128 (0.139)	-5.754** (2.925)
		[-5.8]	[-6.7]	[-0.1]	[-4.9]	[-0.1]	[8.7]	[-10.1]
	관측치	2,747	2,721	1,720	1,718	1,542	1,542	2,746
	R-squared	0.048	0.040	0.067	0.063	0.046	0.051	0.055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소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추정치의 % 변화분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다.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별 분석

가구 소득, 가구원 수, 학력, 성별, 연령 외에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라서도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는 정기조사 외에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력에 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별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근로이력을 확인,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종사상지위를 식별하였으며, 종사상지위에 따른 돌봄 제공의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4-11>에 제시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이 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였다. <표 4-11>의 A열과 B열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근로 확률은 각각 7.9%p(13.6%), 7.1%p(11.1%) 하락하였다. 연간 근로기간은 약 0.5개월(7.6%), 0.7개월(9.4%)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B열의 추정치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모든 비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서로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상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돌봄 제공의 효과를 각각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표 4-11>의 b열과 b*열에는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두 그룹 간에 크게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b열은 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는 돌봄 제공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 근로 강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근무일수는 5.6일, 5.7일, 주당 근로시간

은 45.3시간, 48.3시간으로, 임금근로자의 4.9일, 38.9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강도가 높다. 또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주당 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비율은 42.8%, 45.8%, 주당 근무일수가 6일 이상인 비율은 61.9%, 61.5%로 나타났다(KOSIS, 2020b, 2020c).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근로 강도를 고려하면 돌봄 제공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b열의 결과는 자영업자는 가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근로 여부 및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지 못하고 노동공급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열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나타나는 돌봄 제공의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제공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 확률을 18.4%p(36.3%), 근로를 지속하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약 8.5시간(18.2%) 감소시켰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연간 근로기간도 약 1.2개월 감소시켰다. 무급가족종사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 가구주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부가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이로 인해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 여부 등 노동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공급에 관한 탄력적 의사결정 가능성은 관련 자료(일별 근무시간, 주별 근로일수, 출퇴근 시각)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종사상지위별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으로 매일 근무시간의 길이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은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51.6%로 가장 높았으며(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0.6%,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38.3%, 임금근로자 14.0%), 매주 근무 일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도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41.4%로 가장 높았다(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39.7%,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29.5%, 임금근로

자 11.8%). 또한,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도 무급가족종사자에게서 61.3%로 가장 높았다(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56.6%,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39.2%, 임금근로자 9.8%)(KOSIS, 2020d).

b열과 b*열의 상반되는 결과는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근로를 지속하며 돌봄 제공과 사업체 운영을 병행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내리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노동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1〉 조사 대상자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A] 임금근로자	-0.079** (0.035) [-13.6]	-0.513 (0.372) [-7.6]	-0.872 (2.497) [-1.9]	0.138 (0.159) [2.6]	-6.821 (11.504) [-3.2]	0.082 (0.182) [6.5]	-2.439 (1.685) [-4.3]
관측치	12,912	12,815	7,480	7,482	7,223	7,220	12,910
R-squared	0.044	0.045	0.055	0.035	0.064	0.059	0.048
[B]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0.071* (0.040) [-11.1]	-0.691 (0.436) [-9.4]	-0.463 (2.622) [-1.0]	-0.026 (0.138) [-0.4]	-16.488 (10.584) [-7.9]	-0.115 (0.114) [-9.5]	-2.641 (1.885) [-4.8]
관측치	9,889	9,756	6,245	6,243	5,062	5,060	9,887
R-squared	0.034	0.025	0.054	0.030	0.033	0.029	0.053
[b] 자영업자	-0.020 (0.043) [-2.8]	-0.522 (0.480) [-6.4]	1.440 (3.042) [2.9]	0.009 (0.149) [0.2]	-16.516 (11.575) [-7.5]	-0.153 (0.107) [-12.1]	-2.611 (2.152) [-4.7]
관측치	6,633	6,565	4,651	4,650	4,305	4,304	6,632
R-squared	0.035	0.030	0.054	0.024	0.034	0.029	0.063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b*] 무급가족종사자	-0.184** (0.075) [-36.3]	-1.184 (0.875) [-21.1]	-8.483** (3.726) [-18.2]	-0.184 (0.305) [-3.1]	-12.764 (24.245) [-9.0]	0.445 (0.446) [49.3]	-2.685 (3.471) [-4.9]
관측치	3,256	3,191	1,594	1,593	757	756	3,255
R-squared	0.050	0.032	0.077	0.080	0.066	0.090	0.042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소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 대괄호 안은 추정치의 % 변화분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3. 돌봄 대상에 따른 이질적 효과 분석

이상에서는 돌봄 제공자의 개인 특성 및 가구 특성 등에 따라 돌봄 제공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한편,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돌봄의 대상자는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자녀 등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2〉 참고). 돌봄 제공자의 특성뿐 아니라 돌봄의 대상자(피돌봄자)에 따라서도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이질적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표 4-12〉에는 이를 확인하고자 돌봄의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돌봄 제공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 부모(아버지+어머니), 배우자의 부모(배우자의 아버지+배우자의 어머니)인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으며,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 특히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근로 확률이 각각 5.8%p, 3.2%p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연간 근로기간에도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반면,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20.4%p, 연간 근로기간을 약 2.2개월, 경제상태 만

족도를 약 5.7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제공자의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하여 D*열에는 여성인 돌봄 제공자가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이 시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할 확률은 21.0%p, 연간 근로기간은 약 2.3개월, 경제상태 만족도는 약 7.4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처부모 돌봄과 비교하여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 모두 4배 이상 감소하는 수치로, 여성인 돌봄 제공자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²⁴⁾

돌봄 제공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D열과 D*열의 결과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만연해 왔으며, 처부모보다는 시부모와 동거하며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세대 간 동거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아 왔다. 여권의 신장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으나, 여전히 처부모와의 동거보다 시부모와의 동거가 흔하며, 시부모에 대한 돌봄의 강도가 처부모에 대한 돌봄의 강도보다 높은 측면이 있다. 2018년 기준 부모의 동거자를 남성 가구주에게 묻는 질문에 아들 또는 며느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21.2%로, 딸 또는 사위라고 응답한 비율(5.2%)보다 약 4배 높았다(KOSIS, 2018). 또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 배우자의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한 자들 중 약 90%는 여성이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남성인 돌봄 제공자는 16.0시간, 여성인 돌봄 제공자는 26.5시간으로 나타났다(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24) 돌봄 제공자가 남성인 경우 근로 확률은 4.8%p 하락($p=0.065$)하며, 연간 근로기간은 약 0.5개월 감소($p=0.109$)한다.

〈표 4-12〉 돌봄 대상자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A] 전체	-0.081*** (0.025)	-0.710*** (0.272)	-0.926 (1.788)	0.032 (0.105)	-11.038 (7.167)	-0.030 (0.103)	-2.591** (1.183)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B] 배우자	-0.058 (0.043)	-0.554 (0.562)	2.132 (3.024)	0.169 (0.198)	-8.813 (11.871)	-0.206 (0.128)	-2.831 (2.374)
관측치	26,982	26,711	16,259	16,259	14,629	14,622	26,978
R-squared	0.034	0.031	0.047	0.030	0.009	0.018	0.047
[C] 부모	-0.032 (0.034)	-0.114 (0.357)	-2.268 (2.342)	-0.096 (0.117)	-10.685 (9.786)	-0.081 (0.088)	-0.933 (1.473)
관측치	27,103	26,830	16,351	16,350	14,708	14,701	27,099
R-squared	0.033	0.030	0.047	0.030	0.008	0.018	0.046
[D] 배우자의 부모	-0.204*** (0.058)	-2.242*** (0.576)	-1.787 (4.966)	0.166 (0.315)	-2.334 (18.906)	0.519 (0.638)	-5.702** (2.555)
관측치	26,938	26,667	16,236	16,236	14,602	14,595	26,934
R-squared	0.035	0.031	0.047	0.031	0.009	0.018	0.047
[D*] 배우자의 부모 (돌봄 제공자: 여성)	-0.210*** (0.063)	-2.319*** (0.616)	-3.484 (5.267)	0.089 (0.351)	22.524* (13.673)	0.749 (0.779)	-7.448*** (2.554)
관측치	15,046	14,856	6,684	6,683	5,358	5,356	15,045
R-squared	0.030	0.025	0.069	0.042	0.008	0.020	0.047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4. 추가 분석 및 강건성 확인

가. 추가 분석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돌봄 제공 여부와 함께 돌봄 제공 강도를 고려하여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돌봄에 한정하여 돌봄이 제공되었다고 간주하였다(〈표 4-5〉~〈표 4-12〉).²⁵⁾ 주당 10시간 이하의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강도가 다소 낮은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1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상당하며, 고강도의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및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다(Heitmueller, 2007; Do, 2008; Lilly et al., 2010 등). 이에 돌봄 제공 여부와 돌봄 제공 강도를 모두 고려하여 돌봄 강도에 따른 돌봄 제공의 영향을 〈표 4-13〉, 〈표 4-14〉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돌봄 강도가 근로 여부 및 연간 근로기간과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표 4-13〉에서는 기준점을 변경하는 경우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A열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경우 돌봄의 강도와 무관히 모두 돌봄을 제공하였다고 간주했다(관심변수는 돌봄을 제공한 경우 1,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

25) 본 연구의 관심변수(돌봄 제공 여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제한이 있는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게 주당 1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경우 1, 10시간 이하의 돌봄을 제공하였거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도록 생성하였다.

A열에서는 근로 확률은 하락하지만 연간 근로기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4-5>-<표 4-12>와 동일하게 10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B열에 비해서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⁶⁾ 구체적으로, 종속변수가 근로 여부일 때의 추정치는 -0.081에서 -0.038로, 종속변수가 연간 근로기간일 때의 추정치는 -0.710에서 -0.253로 크기가 감소하였다. A열과 B열은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며, 주당 10시간 이하의 돌봄을 제공한 조사 대상자를 돌봄 제공자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만이 차이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A열에서의 추정치 크기의 감소는 주당 10시간 이하의 상대적 저항도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및 연간 근로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C열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주당 20시간을 초과하여 돌봄을 제공한 경우만 돌봄을 제공했다고 간주했으며, B열과 유사하게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20시간을 초과하는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7.8%p, 연간 근로기간을 약 0.6개월 감소시키는데, 기준점이 10시간인 B열의 추정치와 큰 차이가 없다. 기준점을 0시간, 10시간, 20시간으로 변경하여 돌봄 제공의 효과를 분석한 <표 4-13>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돌봄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일과 돌봄의 병행에 부담을 느끼며 노동시장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시작하는 주당 수발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상대적으로 고강도인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돌봄은 노동시장에서 추가적 이탈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26) 엄밀하게는 추정치의 크기는 커지며, 추정치의 절대값의 크기가 작아졌다. 돌봄 제공이 근로 여부 및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함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본문에는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명시하였다.

〈표 4-13〉 기준점 변경(돌봄 제공 여부, 주당 돌봄 제공 20시간)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A] 돌봄 제공 여부	-0.038*	-0.253	0.626	0.050	-2.450	-0.107	-2.803***
	(0.020)	(0.220)	(1.145)	(0.076)	(7.855)	(0.086)	(0.987)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0	0.048	0.030	0.008	0.018	0.047
[B] 주당 10시간 초과 돌봄	-0.081***	-0.710***	-0.926	0.032	-11.038	-0.030	-2.591**
	(0.025)	(0.272)	(1.788)	(0.105)	(7.167)	(0.103)	(1.183)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C] 주당 20시간 초과 돌봄	-0.078***	-0.633**	-0.843	-0.065	-8.148	-0.002	-2.166
	(0.030)	(0.314)	(2.141)	(0.115)	(8.861)	(0.132)	(1.399)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다음으로, 〈표 4-14〉에서는 관심변수를 돌봄 제공 여부가 아닌 주당 돌봄 시간, 돌봄 제공 기간으로 하여 근로 여부 및 연간 근로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당 돌봄 제공 시간은 근로 여부, 경제상태 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돌봄 제공 기간은 경제상태 만족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열과 B열 모두 주당 돌봄 제공 시간을 관심변수로 하되, B열에서는 주당 10시간 미만의 돌봄 제공은 0시간으로 변환하였으며, 두 열의 분석 결과는 매우 흡사하다. <표 4-14>에 따르면 주당 돌봄 제공 시간이 10시간 늘어날 때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은 0.9%p, 경제상태 만족도는 0.4-0.5점 감소하였다.²⁷⁾ 한편, 주당 10시간 미만의 돌봄 제공을 0시간으로 변환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A열과 B열의 결과가 매우 흡사하게 도출된 것은 <표 4-14>의 결과에 대한 해석²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14> 돌봄 강도에 따른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의 영향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A] 주당 돌봄 제공 시간 (단위: 10시간)	-0.009** (0.004)	-0.076 (0.048)	0.083 (0.335)	0.014 (0.020)	0.293 (0.747)	-0.002 (0.007)	-0.454** (0.212)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B] 주당 돌봄 제공 시간 (10시간 미만: 0시간) (단위: 10시간)	-0.009** (0.004)	-0.078 (0.048)	0.053 (0.341)	0.014 (0.020)	0.225 (0.761)	-0.000 (0.007)	-0.431** (0.211)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C] 돌봄 제공 기간	-0.005	-0.046	0.073	0.009	-0.050	-0.013	-0.453**

27) A열에서 돌봄 제공 시간이 0시간인 경우를 제외(돌봄을 제공한 경우만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분석해보았으며, 주당 돌봄 제공 시간과 근로 확률 간 음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28) “주당 10시간 이하의 상대적 저강도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및 연간 근로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p.78)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단위: 10주)	(0.004)	(0.044)	(0.244)	(0.015)	(1.165)	(0.008)	(0.190)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0	0.048	0.030	0.008	0.018	0.047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 < 0.1$, ** $p < 0.05$, *** $p < 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추가 분석의 마지막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동시장 참여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공식 돌봄 제도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Fu, Noguchi, Kawamura, Takahashi & Tamiya(2017)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장기요양보험 도입이 조사 대상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으며, Sugawara & Nakamura(2014)는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일본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Costa-Font & Vilaplana-Prieto(2023)는 스페인에서의 장기요양보험 확대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의 배우자가 조기에 은퇴할 확률을 하락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돌봄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를 통제한 후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문항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조사부터 제공되며, 돌봄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는 제공되지 않고, 조사 대상자 본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등급, 이용 여부, 인지도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되는 등 데이터에 한

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표 4-15>에는 조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 여부와 연간 근로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와 노동시장 참여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근로 확률은 2.1%p 높고(인지 65.7%, 미인지 63.6%), 연간 근로기간은 0.3개월 긴(인지 7.8개월, 미인지 7.5개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15>의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으면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조사 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표 4-15>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mean test)

(단위: %, %p, 개월)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A)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인지(B)	차이(A-B)
근로 여부	65.7	63.6	2.1**
연간 근로기간	7.8	7.5	0.3***

주: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나. 강건성 확인(robustness check)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속변수 중 하나인 근로 여부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닌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에 해당하며, 이산변수 중에서도 특히 1(현재 근로를 하는 경우) 또는 0(현재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의 값을 갖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이분적 값을 가질 때 실증분석 방법론으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 LPM)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해당 모형은 선형회귀분석²⁹⁾을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 계수 추정치가 한계효과와 일치하여 해석이 용이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반면 선형확률모형은 종속변수의 추정치가 0보다 작거나 1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 관심변수 및 통제변수들의 특정한 값에서 종속변수 예측치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로짓 모형(logit model) 또는 프로빗 모형(probit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선형확률모형인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이전까지의 분석들과 달리 <표 4-16>에서는 종속변수를 근로 여부로 하여, 로짓 모형과 프로빗 모형을 활용,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표 4-16>의 (2)-(4)열에 명시된 한계효과는 관심변수와 통제변수들 각각의 평균치에서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 at the mean, MEM)가 아닌 개별 한계효과들의 평균값(average marginal effect, AME)을 의미한다.

로짓, 프로빗, 패널 로짓모형의 한계효과 추정치는 각각 -0.079, -0.078, -0.073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으며, 고정효과 모형의 계수 추정

29) <표 4-6>에서 활용한 OLS, 본 연구의 주된 방법론인 고정효과 모형 등이 이에 포함된다.

치(한계효과 추정치)인 -0.081과도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형확률모형의 계수 추정치와 로짓 또는 프로빗 모형의 한계효과 추정치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며, 추정 방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표 4-16>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도 고정효과 모형을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함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여부에 미치는 영향(로짓, 프로빗 모형)

	(1)	(2)	(3)	(4)
	고정효과	로짓	프로빗	패널 로짓
계수 추정치	-0.081*** (0.025)	-0.433** (0.170)	-0.256*** (0.097)	-0.836*** (0.239)
한계효과 추정치	상동	-0.079** (0.031)	-0.078*** (0.030)	-0.073*** (0.021)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다음으로 <표 4-17>에서는 종속변수를 근로 여부가 아닌 은퇴 여부로 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가 은퇴했다고 응답할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는 각기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두 가지를 생성하였다. 은퇴 여부(기준 1)는 현재 근로하지 않으면서 구직도 하지 않는 경우를 은퇴했다고 간주하여 1, 그 외에는 0의 값을 갖도록 생성하였으며, 은퇴 여부(기준 2)는 현재 근로하지 않으면서 구직을 하지 않고 일할 의사도 없는 경우를 은퇴했다고 간주하여 1, 그 외 0의 값을 갖도록 생성하였다.

분석 결과, (2)열에서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돌봄은 돌봄 제공자가 은퇴(기준 1)했다고 응답할 확률을 7.7%p 상승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열에서는 은퇴(기준 2)했다고 응답할 확률이 4.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았다. 기준 1과 기준 2의 차이가 근로 의사 여부를 고려하면 <표 4-17>의 결과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돌봄은 돌봄 제공자가 근로할 확률을 낮추고 은퇴(근로하지 않으면서 구직도 하지 않는 경우)했다고 응답할 확률을 상승시키는 하였으나, 근로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돌봄 제공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이탈 중 상당 부분은 비자발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근로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7> 비공식 노인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은퇴 여부에 미치는 영향

	(1)	(2)	(3)
	근로 여부	은퇴 여부 (기준 1)	은퇴 여부 (기준 2)
돌봄 제공	-0.081*** (0.025)	0.077*** (0.025)	0.049** (0.024)
관측치	27,396	27,396	27,396
R-squared	0.034	0.038	0.034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마지막으로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 문제를 ① 조사 대상자의 연령, ② 신규 패널 유입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2006년 1차 조사 당시 45세 이상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조사 대상자들이 60세 이상이다(5차

조사부터 포함된 신규 패널은 제외). 연령대를 고려하면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건강 악화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여타 데이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모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³⁰⁾ 패널에서의 이탈 여부에 따라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추정치에 편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마모 편의(attrition bias)라 한다.

〈표 4-18〉의 A-D열에서는 패널 마모로 인한 추정치의 편의를, E열에서는 신규 패널 포함 여부에 따른 추정치의 편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A열에서는 65세 미만인 자들을 모두 포함하였으며³¹⁾, B열에서는 조사 간 사망한 자들을 제외하였다. C열에서는 1-7차 조사에 총 5차례 이상 응답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D열에서는 7차례의 조사에 모두 응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B열에서는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9%p, 연간 근로 기간을 약 0.8개월,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8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치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 모두 A열과 매우 유사하다. 5차례 이상 조사에 응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C열의 분석 결과(근로 확률 6.8%p, 연간 근로기간 약 0.6개월 감소, 경제상태 만족도 약 2.6점 감소)도 A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7차례 조사에 모두 응한 자들만을 포함한 D열에서는 근로 확률이 유의하게 9.1%p 하락하였다. 다만, 연간 근로기간과 경제상태 만족도는 각각 0.7개월, 3.0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치의 크기는 A열과 유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18〉 A-D열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열과 C열의 결과가 A열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D열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일부 확

30) 조사에 성공한 생존자 수는 5차 7,029명, 6차 6,618명, 7차 6,136명으로 1차 조사에서 조사에 성공한 10,254명 대비 각각 68.5%, 64.5%, 5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령화연구패널조사 1, 5, 6, 7차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31) 〈표 4-7〉의 분석 대상과 동일하다.

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열의 관측치 수가 A열의 절반 이하이며 추정치의 크기는 A열과 유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마모로 인한 추정치의 편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5차 조사를 기준으로 생존자 조사성공 패널 수 7,029명, 사망자 조사성공 패널 수 438명으로 나타나는 등 1차 조사를 10,25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후 지속적으로 표본이 마모되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5차 조사에서는 신규 패널 약 1,000명이 추가되어 5차 조사부터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로 구성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실증분석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외에 기존 패널과 신규 패널의 관측되지 않는 특성들이 두 집단 간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회귀분석 수행 시 신규 패널 포함 여부가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E열에서는 신규 패널 포함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해본다.

E열에는 신규 패널을 제외하고 기존 패널만을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열과 동일하게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가 감소하며, 추정치의 크기도 A열과 유사하여 신규 패널 포함 여부에 따른 표본 선택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18〉 마모 편의 및 표본 선택 편의 확인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A] 모든 샘플	-0.081*** (0.025)	-0.710*** (0.272)	-0.926 (1.788)	0.032 (0.105)	-11.038 (7.167)	-0.030 (0.103)	-2.591** (1.183)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R-squared	0.034	0.031	0.048	0.030	0.008	0.018	0.047
[B] 사망자 제외	-0.089*** (0.026)	-0.776*** (0.289)	-1.299 (1.822)	-0.003 (0.106)	-12.213 (7.484)	-0.033 (0.107)	-2.796** (1.254)
관측치	25,721	25,456	15,660	15,659	14,078	14,072	25,717
R-squared	0.033	0.030	0.049	0.030	0.008	0.019	0.045
[C] n ≥ 5인 경우	-0.068** (0.030)	-0.630* (0.336)	-0.450 (2.090)	0.067 (0.119)	-15.738* (8.457)	-0.065 (0.126)	-2.577* (1.487)
관측치	17,715	17,524	11,051	11,049	9,905	9,903	17,713
R-squared	0.041	0.037	0.056	0.035	0.017	0.029	0.057
[D] n = 7인 경우	-0.091** (0.044)	-0.697 (0.492)	-3.824 (2.837)	-0.014 (0.146)	-14.355 (9.627)	0.118 (0.206)	-3.042 (2.004)
관측치	11,242	11,101	7,278	7,280	6,505	6,504	11,240
R-squared	0.042	0.034	0.067	0.041	0.024	0.036	0.057
[E] 신규패널 제외	-0.076*** (0.025)	-0.640** (0.276)	-0.787 (1.847)	0.035 (0.109)	-13.395* (7.364)	-0.040 (0.105)	-2.646** (1.212)
관측치	24,905	24,666	14,509	14,507	12,980	12,974	24,901
R-squared	0.034	0.031	0.049	0.031	0.017	0.028	0.049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여부, 학력, 자가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돌봄 제공에 기인한 인과적인 것인지 확인하고자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돌봄 제공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사이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한 경우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모두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실증분석 방법론은 고정효과 모형이다. 분석 결과,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1%p(13.4%),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10.1%),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6점(4.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고졸 이하, 여성, 55-64세, 가구 소득 평균 이상, 가구원 수 4명 이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



제5장

관련 제도 검토

제1절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5장 관련 제도 검토

제4장에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관련 제도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제1절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1.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개요

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8월에 도입되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하여 사용(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이 가능하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르면,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등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또한,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6항).

〈표 5-1〉 가족돌봄휴직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질병, 사고, 노령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기간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신청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의 거부 사유	-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보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연혁	- 2012.08.02. 가족돌봄휴직 제도 도입 - 2019.10.01. 가족 대상에 ‘조부모, 손자녀’ 추가 - 2020.01.01. 가족돌봄휴직 근속기간 요건 완화(1년→6개월)

주: 고용노동부, (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0550에서 2023. 03.16. 인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제작성

나.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1월에 도입되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

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연간 10일이 연장되어 총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10일(한부모 근로자 15일) 연장된 바 있다. 단, 연장된 휴가는 ① 근로자의 가족이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휴업, 휴교, 휴원한 경우, ③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등교(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사용 전(휴가 사용일 포함)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가족돌봄휴직과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과 마찬가지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표 5-2〉 가족돌봄휴가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기간	- 1일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사용 가능) - 해마다 반복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신청	- 휴가 사용 전(휴가 사용일 포함)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사업주의 거부 사유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연혁	- 2020.01.01.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 - 2020.09.08. 비상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20일(한부모 근로자 25일) 이내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주: 고용노동부. (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0550에서 2023. 03.16. 인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1월에 도입되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는 30-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하며, 단축기간은 1년이나, 학업 외 사유는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³²⁾ 외에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2항).

〈표 5-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상	-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
기간	- 최초 신청기간은 1년 이내, 학업 외 사유는 1회 연장하여 최대 3년까지 가능
신청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사업주의 거부 사유	- 가족돌봄 등 단축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2)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삭감 가능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된다.

구분	내용
연혁	- 2020.01.0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 2021.01.01. 3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 2022.01.01.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주: 고용노동부. (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0550에서 2023. 03.16. 인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2.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 현황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 활용 가능 여부, 활용 실적,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일·가정양립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 개선,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수행된다. 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약 5,000개를 대상으로 하며, 각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설문은 ① 사업체 일반현황, ② 임신 및 출산지원제도의 활용 실태, ③ 육아 등 돌봄지원제도의 활용 실태, ④ 유연근로 및 일하는 문화, ⑤ 남녀고용 평등기회 등 5개 영역 약 9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세 번째 영역에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제거하고자 2020년 이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절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족돌봄휴가

는 2020년 1월에 도입되어 그 운영 현황이 2020년도 일·가정양립실태 조사부터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20년 1월 도입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운영 현황은 2021년도 일·가정양립실태조사에 처음 제시되었다. 이에 가족돌봄휴직 운영 현황은 2019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가족돌봄휴가 운영 현황은 2020년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 현황은 2021년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활용해 파악하였다.

가. 가족돌봄휴직 운영 현황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중 20.4%가 ‘잘 알고 있다’, 13.2%가 ‘대충 알고 있다’, 16.7%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여, 50.3%가 가족돌봄휴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49.7%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사업체의 57.8%가 가족돌봄휴직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100-299인 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각각 15.7%, 7.7%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민단체, 종교단체(64.1%), 민간회사(51.8%), 법인단체(40.3%), 정부 외 공공기관(20.8%), 외국인회사(6.9%) 순으로 높았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절반 수준인 26.1%로 나타났다.

〈표 5-4〉 가족돌봄휴직: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100.0(5,097)	20.4	13.2	16.7	49.7
규모	5-9인	100.0(1,609)	17.0	9.7	15.5	57.8
	10-29인	100.0(1,435)	18.5	18.1	20.4	43.1
	30-99인	100.0(990)	43.1	20.6	13.8	22.5
	100-299인	100.0(615)	53.5	18.7	12.1	15.7
	300인 이상	100.0(448)	70.8	15.1	6.5	7.7
유형	민간회사	100.0(3,960)	19.1	12.4	16.7	51.8
	외국인회사	100.0(49)	57.7	30.6	4.8	6.9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49)	48.9	14.1	16.3	20.8
	법인단체	100.0(583)	22.2	20.6	16.9	40.3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56)	11.5	4.9	19.5	64.1
노동조합	없음	100.0(4,064)	18.5	12.7	16.7	52.1
	있음	100.0(1,033)	39.2	18.3	16.4	26.1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표 5-5〉는 가족돌봄휴직을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의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를 보여준다. 전체 사업체 중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2.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1.6%, 15.6%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인 사업체 21.3%, 300인 이상 사업체 4.2%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돌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민간회사 중 18.0%가 가족돌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

다고 응답하여 타 유형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았으며, 정부 외 공공기관은 0.4%만이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15%p 낮았다.

〈표 5-5〉 가족돌봄휴직: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100.0(3,479)	52.8	31.6	15.6
규모	5-9인	100.0(784)	50.4	28.3	21.3
	10-29인	100.0(915)	52.3	35.4	12.3
	30-99인	100.0(812)	59.6	35.8	4.6
	100-299인	100.0(545)	63.7	31.9	4.4
	300인 이상	100.0(423)	75.5	20.4	4.2
유형	민간회사	100.0(2,553)	51.0	31.1	18.0
	외국인회사	100.0(45)	62.7	34.6	2.7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18)	70.4	29.2	0.4
	법인단체	100.0(431)	57.6	35.5	7.0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32)	51.1	47.0	1.8
노동 조합	없음	100.0(2,561)	50.4	32.0	17.6
	있음	100.0(918)	67.7	29.5	2.8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2019년 활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활용 실적이 있는 경우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라는 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100-299인(13.9%), 300인 이상(30.8%), 외국인회사(32.2%), 정부 외 공공기관(15.9%),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14.5%)에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6〉 가족돌봄휴직: 활용 실적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있음	없음
전체		100.0(3,174)	4.1	95.9
규모	5-9인	100.0(623)	2.1	97.9
	10-29인	100.0(818)	3.9	96.1
	30-99인	100.0(787)	7.2	92.8
	100-299인	100.0(531)	13.9	86.2
	300인 이상	100.0(415)	30.8	69.2
유형	민간회사	100.0(2,268)	3.2	96.8
	외국인회사	100.0(44)	32.2	67.8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15)	15.9	84.1
	법인단체	100.0(416)	3.3	96.7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31)	2.1	97.9
노동 조합	없음	100.0(2,266)	2.1	97.9
	있음	100.0(908)	14.5	85.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가 90.3%,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가 9.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을수록, 활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활용 실적이 적을수록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자가 없어서 활용 실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혹은 대상자 여부에 대한 파악이 미진한 것인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5-7〉 가족돌봄휴직: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전체		100.0(2,829)	90.3	9.7
규모	5-9인	100.0(607)	92.8	7.2
	10-29인	100.0(785)	90.4	9.6
	30-99인	100.0(717)	84.8	15.2
	100-299인	100.0(443)	77.6	22.4
	300인 이상	100.0(277)	65.3	34.7
유형	민간회사	100.0(2,094)	91.3	8.7
	외국인회사	100.0(36)	87.0	13.0
	정부 외 공공기관	100.0(292)	89.7	10.3
	법인단체	100.0(377)	83.7	16.3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30)	98.3	1.7
노동 조합	없음	100.0(2,133)	91.6	8.4
	있음	100.0(696)	82.4	17.6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19). 2019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나. 가족돌봄휴가 운영 현황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중 15.6%가 ‘잘 알고 있다’, 11.4%가 ‘대충 알고 있다’, 14.4%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여, 41.4%가 가족돌봄휴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8.6%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와 인지도 간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5-9인 사업체의 68.2%, 10-29인 사업체의 57.1%가 가족돌봄휴가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모르

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으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1.3%, 78.5%로 확인되었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민단체, 종교단체(80.5%), 법인단체(62.4%), 민간회사(58.6%), 외국인회사(48.1%), 정부 외 공공기관(29.4%) 순으로 높았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36.9%)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59.8%)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표 5-8〉 가족돌봄휴가: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100.0(5,200)	15.6	11.4	14.4	58.6
규모	5-9인	100.0(1,528)	7.8	8.6	15.3	68.2
	10-29인	100.0(1,386)	16.7	13.4	12.9	57.1
	30-99인	100.0(1,068)	56.7	24.9	13.9	4.6
	100-299인	100.0(747)	71.3	16.5	12.3	0.0
	300인 이상	100.0(471)	78.5	12.9	8.6	0.0
유형	민간회사	100.0(4,109)	14.5	12.0	14.9	58.6
	외국인회사	100.0(33)	28.3	18.1	5.6	48.1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41)	44.1	8.3	18.3	29.4
	법인단체	100.0(675)	23.2	5.5	8.9	62.4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42)	11.0	1.0	7.6	80.5
노동 조합	없음	100.0(4,296)	14.3	11.2	14.7	59.8
	있음	100.0(904)	38.6	14.4	10.0	36.9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휴가를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활용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표 5-9〉에 제시하였다. 전체 사업체 중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

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3.5%, 25.5%, 21.0%로 나타났다.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체 27.9%, 300인 이상 사업체 1.2%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돌봄휴가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동 비율이 민간회사에서 가장 높았으며 (22.2%),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약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9〉 가족돌봄휴가: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100.0(3,287)	53.5	25.5	21.0
규모	5-9인	100.0(503)	43.2	29.0	27.9
	10-29인	100.0(565)	53.2	24.1	22.7
	30-99인	100.0(1,002)	72.8	21.8	5.5
	100-299인	100.0(746)	78.9	16.8	4.4
	300인 이상	100.0(471)	93.2	5.5	1.2
유형	민간회사	100.0(2,470)	51.6	26.2	22.2
	외국인회사	100.0(28)	75.9	13.3	10.8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08)	76.5	9.4	14.1
	법인단체	100.0(460)	68.7	22.4	9.0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21)	73.6	26.4	0.0
노동 조합	없음	100.0(2,484)	50.6	26.7	22.7
	있음	100.0(803)	85.8	11.9	2.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표 5-10〉에는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을 제시하였다.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가능한 사업체 중 2020년 활용 실적이 있는 경우는 6.2%에 그쳤다. 이는 가족돌봄휴직과 유사하게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점,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 정부 외 공공기관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10〉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있음	없음
전체		100.0(2,986)	6.2	93.8
규모	5-9인	100.0(381)	4.5	95.5
	10-29인	100.0(466)	7.3	92.7
	30-99인	100.0(955)	4.8	95.2
	100-299인	100.0(724)	10.0	90.0
	300인 이상	100.0(460)	49.5	50.5
유형	민간회사	100.0(2,191)	6.1	93.9
	외국인회사	100.0(27)	9.9	90.1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02)	14.3	85.7
	법인단체	100.0(445)	5.3	94.7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21)	2.0	98.0
노동 조합	없음	100.0(2,198)	5.5	94.5
	있음	100.0(788)	12.8	87.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2020년 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5-11〉에 따르면, ‘대상자가 없어서’가 82.7%,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가 17.3%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활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활용 실적이 적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1〉 가족돌봄휴가: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전체		100.0(2,413)	82.7	17.3
규모	5-9인	100.0(351)	91.0	9.0
	10-29인	100.0(411)	79.1	20.9
	30-99인	100.0(848)	73.3	26.7
	100-299인	100.0(546)	74.8	25.2
	300인 이상	100.0(257)	63.9	36.1
유형	민간회사	100.0(1,847)	84.1	15.9
	외국인회사	100.0(20)	87.8	12.2
	정부 외 공공기관	100.0(198)	78.3	21.7
	법인단체	100.0(330)	69.0	31.0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18)	89.4	10.6
노동 조합	없음	100.0(1,886)	82.5	17.5
	있음	100.0(527)	84.5	15.5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0). 2020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운영 현황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사업체 중 15.6%가 ‘잘 알고 있다’, 18.3%가 ‘대충 알고 있다’, 16.9%가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여, 50.8%가 가족돌봄휴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49.2%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5-9인 사업체의 51.9%, 10-29인 사업체의 52.6%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에

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18.0%, 11.2%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민단체, 종교단체(82.5%), 민간회사(51.5%), 외국인회사(40.6%), 법인단체(26.6%), 정부 외 공공기관(26.1%) 순으로 높았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33.2%)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50.3%)보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표 5-12〉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들어본 적은 있다	모른다
전체		100.0(5,070)	15.6	18.3	16.9	49.2
규모	5-9인	100.0(1,603)	13.6	17.6	16.9	51.9
	10-29인	100.0(1,373)	14.3	16.0	17.1	52.6
	30-99인	100.0(1,001)	26.6	28.1	16.1	29.3
	100-299인	100.0(664)	32.8	29.0	20.2	18.0
	300인 이상	100.0(429)	47.3	28.8	12.7	11.2
유형	민간회사	100.0(4,055)	13.8	17.1	17.6	51.5
	외국인회사	100.0(8)	59.4	0.0	0.0	40.6
	정부 외 공공기관	100.0(629)	33.7	27.2	13.1	26.1
	법인단체	100.0(333)	30.2	34.0	9.2	26.6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45)	6.7	7.8	3.0	82.5
노동 조합	없음	100.0(4,290)	13.7	18.3	17.8	50.3
	있음	100.0(780)	44.4	18.7	3.8	33.2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인지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표 5-13〉에 제시하였다. 전체 사업

체 중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0.4%, 42.9%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인 사업체 47.1%, 10-29인 43.6%, 300인 이상 사업체 19.7% 등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유형별로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민간회사에서 46.7%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혀 활용할 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30%p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전체		100.0(3,039)	36.8	20.4	42.9
규모	5-9인	100.0(783)	28.0	24.9	47.1
	10-29인	100.0(674)	40.8	15.6	43.6
	30-99인	100.0(670)	57.4	13.2	29.4
	100-299인	100.0(532)	64.2	13.0	22.7
	300인 이상	100.0(380)	70.5	9.9	19.7
유형	민간회사	100.0(2,283)	32.3	20.9	46.7
	외국인회사	100.0(5)	100.0	0.0	0.0
	정부 외 공공기관	100.0(475)	67.2	9.6	23.2
	법인단체	100.0(261)	59.3	24.5	16.3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15)	39.0	43.3	17.7
노동 조합	없음	100.0(2,458)	33.3	21.1	45.6
	있음	100.0(581)	76.4	11.6	12.0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표 5-14〉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활용 실적을 제시하였으며, 활용 실적이 있는 경우는 7.8%로 나타났다. 활용 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사업체의 특성별로 100-299인(18.7%), 300인 이상(39.8%), 정부 외 공공기관(14.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4〉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있음	없음
전체		100.0(2,006)	7.8	92.2
규모	5-9인	100.0(437)	4.8	95.2
	10-29인	100.0(413)	8.9	91.1
	30-99인	100.0(456)	10.2	89.9
	100-299인	100.0(393)	18.7	81.3
	300인 이상	100.0(307)	39.8	60.2
유형	민간회사	100.0(1,395)	6.7	93.3
	외국인회사	100.0(5)	8.8	91.2
	정부 외 공공기관	100.0(394)	14.1	85.9
	법인단체	100.0(202)	9.8	90.2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10)	3.9	96.1
노동 조합	없음	100.0(1,489)	7.6	92.4
	있음	100.0(517)	8.6	91.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마지막으로, 활용 실적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표 5-15>에 따르면, ‘대상자가 없어서’가 87.1%,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가 12.9%로 나타났으며,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활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활용 실적이 적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5-1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실적이 없는 이유

		(단위: %, 관측치 수)		
구분		전체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전체		100.0(1,706)	87.1	12.9
규모	5-9인	100.0(415)	92.0	8.0
	10-29인	100.0(378)	87.3	12.7
	30-99인	100.0(416)	77.7	22.4
	100-299인	100.0(313)	60.7	39.3
	300인 이상	100.0(184)	60.8	39.2
유형	민간회사	100.0(1,231)	89.1	10.9
	외국인회사	100.0(3)	97.6	2.4
	정부 외 공공기관	100.0(295)	90.2	9.8
	법인단체	100.0(168)	66.6	33.4
	시민단체, 종교단체	100.0(9)	100.0	0.0
노동 조합	없음	100.0(1,302)	88.0	12.0
	있음	100.0(404)	80.6	19.4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3. 해외 주요국의 가족돌봄휴가제도 현황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35개국이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족돌봄휴가제도의 대상, 기간, 급여 등 세부 사항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돌봄의 대상을 배우자/파트너,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돌봄의 대상을 더 넓게 인정하는 일부 국가도 있다. 호주에서는 가족 구성원(family member) 외에도 가족은 아니지만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자(household member)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가까운 사람(closely related person), 네덜란드에서는 친구 혹은 동일한 가구에 거주하는 자(friend or household member)를 돌봄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일반적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자의 질병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돌봄의 대상이 자녀일 경우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경미한 질병의 돌봄을 위한 단기휴가와 위중한 질병에 대한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장기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³³⁾ 단기휴가는 일반적으로 연간 일정한 일수나 주를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형태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2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단기휴가를 연차의 형태 대신 필요시마다 사건 기반(per episode basis)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등에서는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 3일,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3) 단기휴가는 우리나라의 가족돌봄휴가, 장기휴가는 우리나라의 가족돌봄휴직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중한 질병에 대한 돌봄 시 사용하게 되는 장기휴가는 거의 모든 경우에 사건 기반으로 제공되며, 사용 가능한 기간은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기휴가 기간은 2-6개월이며, 스웨덴(100일), 독일 및 오스트리아(6개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노르웨이(1,300일)와 프랑스(3년) 등은 특정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긴 장기휴가 기간이 제공된다.

급여의 지급 여부 및 수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다. 벨기에, 일본, 프랑스 등을 제외한 상당수 국가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단기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된다. 단기휴가가 유급인 국가들의 급여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70%, 독일 80%, 오스트리아 100% 등으로 확인된다. 이와 반대로 위중한 질병 등을 위한 돌봄 시 사용할 수 있는 장기휴가는 무급인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은 <표 5-16>에 국가별로 돌봄대상, 자격요건, 기간, 급여 등을 정리하여 명시하였다.

〈표 5-16〉 해외의 가족돌봄휴가제도 현황

국가명	돌봄 대상	자격 요건	기간	급여
호주	직계가족(immediate family member)과 가구 구성원	비정규직 제외 모든 근로자 모든 근로자	연간 10일	유급(100%)
	12세 미만의 자녀	-	연간 2주	무급
	자녀 외 부양가족	-	연간 1주	유급(100%)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 또는 중병을 앓고 있는 자녀	-	연간 6개월 (9개월까지 연장 가능)	무급
오스트리아	증병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 또는 8세 이하 아동 (장애아인 경우 21세까지 가능)	-	연간 12개월 (51개월까지 연장 시 무급)	유급(EUR786.78)
	말기환자인 부양가족	-	연간 2개월	유급(EUR786.78)
	가구 구성원의 임원 또는 질병을 포함한 합당한 사유	-	연간 10일	무급
	직계가족의 돌봄	50인 이상 기업	연간 3-5일(British Columbia, New Brunswick), 연간 10일(Quebec and Ontario)	무급
캐나다	심각한 질병 및 상해를 입은 가족	-	연간 8주	무급
	향후 26주 이내에 사망의 위험이 있는 가족	지난 52주간 600시간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근로자	최장 26주까지	유급(55%), 상한액 있음
	위독한 가족 구성원	지난 52주간 600시간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근로자	이른 성인의 경우 52주 기간 중 15주	
			아픈 아이의 경우 52주 동안 35주	

국가명	돌봄 대상	자격 요건	기간	급여
핀란드	10세 미만의 자녀	-	건당 4일, 건수 제한 없음	유급(단체 협약에 따른 금액)
	가족 관련 긴급한 사유	-	기간 제한 없음	무급(단체 협약에 따라 다름)
프랑스	중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자녀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건당 3년	근속연수와 가족 구성에 따라 최장 310일간 유급
	16세 미만의 자녀		연간 3-5일	무급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	-	3개월 1회 갱신 가능	최장 3주간 유급
독일	12세 미만의 자녀	건강보험가입 근로자	연간 자녀당 10일, 연간 부/모 각 최장 25일	유급(80%)
	예기치 않았던 질병을 앓게 된 부양가족	-	10일	유급(90%)
	장기간 돌봄을 요하는 부양가족	1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6개월	무급 (단, 무이자 대출자격 부여)
	예기치 않았던 질병을 앓게 된 부양가족	-	건당 10일	무급
아일랜드	직제가족	-	연간 3일, 3년동안 최대 5일	유급(100%)
	부양가족	현 고용주에게 최소 12개월 고용된 자	건당 2년	무급(단 자산조사에 따라 돌봄급여 수급 가능)
일본	6세 미만의 자녀	-	6세 미만 자녀 1명일 때 5일, 6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일 때 10일	무급
	2주 이상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중병의 부양가족	-	각 가족당 93일	유급(67%)
이스라엘	16세 미만의 자녀	-	연간 8일(병가 사용)	유급(2일째까지 50%)
	배우자 또는 65세 이상의 부모	-	연간 16일(한부모) 연간 6일(병가 사용)	유급(4일째까지 100%) 유급(100%)

국가명	돌봄 대상	자격 요건	기간	급여
이탈리아	8세 미만의 자녀	-	3세 미만인 경우 무한 3-8세인 경우 연간 5일	무급
	중병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	근로기간 중 2년(한 번에 가족 중 한 명만 휴가 사용)	유급(100%) 상한액 있음
네덜란드	아픈 자녀, 배우자, 부모, 친구, 가구 구성원	모든 근로자 (단 사업장 사유로 고용주 지부권 행사 가능)	연간 10일	유급(70%)
	중병의 자녀 및 부양가족	모든 근로자 (단 사업장 사유로 고용주 지부권 행사 가능)	건당 6주 (고용주 동의하에 파트타임/풀타임 선택 가능)	무급
뉴질랜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현 고용주에게 최소 26주 근로경력이 있는 근로자	연간 5일(병가에서 할당)	유급(100%)
노르웨이	12세 미만의 자녀	-	12세 미만 자녀 1-2명일 때 10일, 12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때 15일	유급(100%) 상한액 있음
	배우자 및 부모	-	건당 10일	무급
	질병,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4주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보험 가입자	건당 1,300일(5년)	유급(최대 1년간 100%, 이후 4년 동안 66%)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4주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보험 가입자	건당 60일	유급(100%) 상한액 있음
폴란드	부양가족	-	연간 14일	유급(80%)
	8세 미만의 자녀 (예외적 상황 - 학교휴업, 질병 등)	-	60일까지	유급(80%)

국가명	돌봄 대상	자격 요건	기간	급여
스페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전당 2년	유급(100%)
	18세 미만의 중병 아동을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	지난 7년간 180일 이상 사회보험에 기여		유급(100%) 상한액 있음
	중병 가족을 돌보기 위한 무급 휴가	고용주는 사업상의 이유로 거절가능	전당 2년	무급(무급이지만 간병인은 특정 상황에서 지원받음)
스웨덴	12세 미만의 자녀, 특수 상황인 경우 15세 미만의 자녀	-	연간 1자녀당 120일, 일반 간병인이 질병에 걸린 경우 60일을 사용	유급(77.6%) 상한액 있음
	중병의 부양가족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	-	전당 100일	유급(80%) 상한액 있음
	8세 미만의 자녀	사회보험 가입자	전당 15일(가족 자격)	유급(80%)
슬로베니아	동거가족	사회보험 가입자	전당 7일, 심각한 질병일 때 최장 6개월	유급(80%)

주: 1) OECD Family Database에서 일부 국가를 선정

2) 허민숙(2019)을 참고하였음

자료: OECD, (2020), OECD Family Database: PF2.3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3.08.11. 인출

4. 시사점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① 인지도, ② 활용 가능 여부, ③ 급여 지급 여부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인지도와 활용 가능 여부 측면에서는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타 제도와 함께 살펴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여러 정책들이 수립·시행되고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5-17〉에는 2019-2021년 3년간의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도와 함께 타 제도들의 인지도를 제시하였다. 2019-2021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6.2%, 51.5%, 49.2%로 나타났다.³⁴⁾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3.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6.4%), 배우자 출산휴가(14.8%), 육아휴직(13.4%), 출산전후휴가(5.0%) 등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

34) 단,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도입되어 2020년, 2021년의 각년도 인지도와 함께 2개년도 평균 인지도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2020년 도입되었으나 2021년부터 그 현황이 제공되어 2021년 1개년도 인지도를 제시하였다.

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가족돌봄휴직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49.7%, 2020년 46.1%, 2021년 42.7%, 가족돌봄휴가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58.6%, 2021년 44.4%로 낮아지는 등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인지도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5-17>에 명시된 여타 제도들과의 인지도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므로,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인지도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인지도 개선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소규모 사업체, 민간 회사,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체 등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17>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인지도 현황

(단위 %)

구분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잘 알고 있다	2019	53.9	45.0	32.6	37.9	26.2	20.4	-	-
	2020	54.1	36.1	33.3	41.4	28.1	19.8	15.6	-
	2021	58.1	42.8	41.0	46.6	31.4	22.0	20.5	15.6
	평균	55.4	41.3	35.6	42.0	28.6	20.7	18.1	-
대충 알고 있다	2019	25.8	27.2	22.2	27.1	22.3	13.2	-	-
	2020	21.1	22.1	24.8	25.9	20.5	14.7	11.4	-
	2021	24.8	22.4	25.0	26.1	21.0	20.8	20.6	18.3
	평균	23.9	23.9	24.0	26.4	21.3	16.2	16.0	-
들어본 적은 있다	2019	18.1	18.7	24.1	21.5	15.3	16.7	-	-
	2020	18.6	25.3	29.0	19.5	18.4	19.4	14.4	-
	2021	10.5	16.1	18.9	13.9	15.3	14.5	14.4	16.9
	평균	15.7	20.0	24.0	18.3	16.3	16.9	14.4	-

구분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모른다	2019	2.1	9.1	21.1	13.5	36.2	49.7	-	-
	2020	6.2	16.6	12.8	13.2	33.0	46.1	58.6	-
	2021	6.6	18.7	15.2	13.5	32.3	42.7	44.4	49.2
	평균	5.0	14.8	16.4	13.4	33.8	46.2	51.5	-

주: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다음으로 <표 5-18>에서는 2019-2021년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여부를 타 제도들과 함께 살펴본다.³⁵⁾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인지도는 여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의 인지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참고), 활용 가능 여부에서는 제도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사람이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54.5%, 52.3%이며, 이 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36.8%)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활용 가능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타 제도들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7.0%, 25.5%,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

35) 단,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도입되어 2020년, 2021년의 각 연도 활용 가능 여부와 함께 2개년도 평균 활용 가능 여부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2020년 도입되었으나 2021년부터 그 현황이 제공되어 2021년 1개년도 활용 가능 여부를 제시하였다.

율은 각각 18.5%, 22.3%로 나타나는 등 절반에 가까운 경우가 가족돌봄 휴직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보완의 일환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별직) 및 제39조(과태료)에 명시되어 있는 별직과 과태료의 수준이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8〉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활용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2019	61.6	57.9	51.2	45.4	49.3	52.8	-	-
	2020	49.4	45.8	45.4	47.3	53.1	55.7	53.5	-
	2021	55.9	56.9	49.5	50.7	55.8	55.0	51.1	36.8
	평균	55.6	53.5	48.7	47.8	52.7	54.5	52.3	-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019	23.3	24.1	32.5	26.4	26.9	31.6	-	-
	2020	24.0	24.2	23.7	24.9	27.6	24.9	25.5	-
	2021	25.9	25.9	24.0	26.4	26.4	24.4	25.4	20.4
	평균	24.4	24.7	26.7	25.9	27.0	27.0	25.5	-
전혀 활용할 수 없음	2019	15.1	18.0	16.2	28.1	23.8	15.6	-	-
	2020	26.6	30.0	30.8	27.8	19.3	19.3	21.0	-
	2021	18.2	17.1	26.5	22.9	17.8	20.6	23.5	42.9
	평균	20.0	21.7	24.5	26.3	20.3	18.5	22.3	-

주: 고용노동부. (2021). 2021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마지막으로, 급여 지급 측면에서 간략히 논의한다. <표 5-16>에서는 OECD 가입국 중 상당수 국가에서 경미한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단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휴가가 유급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의 급여 현황을 제시한 <표 5-19>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 필요시 유급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두 제도의 사용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 기간 동안의 소득 감소로 인하여 실제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급여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우선적 논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9>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 제도 급여 현황

구분	내용
출산전후휴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급여) 90일 중 최초 60일 유급(통상임금).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은 사업주의 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기간임. 단,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 원 한도 지원
배우자출산휴가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급여) 유급(통상임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급여) 임금 삭감 불가
육아휴직	(법적 근거 및 급여) 「고용보험법」 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적 근거 및 급여)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산정
가족돌봄휴직	무급
가족돌봄휴가	무급

주: 1. 고용노동부. (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0550에서 2023. 03.16. 인출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2.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으로 작성

실증분석을 수행한 제4장 제3절에서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이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 모두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개인적 차원으로는 소득수준 감소 등 경제상태 악화 등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과 돌봄의 원활한 병행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지도 개선, 인식 제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행 법률이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급여 지급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중풍 후유증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에게 주어지며, 일정 절차³⁶⁾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

36)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

리인 수급권이 부여된다.

급여의 종류는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거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단기간 보호하며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섬·벽지 지역 거주자, 특정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한 자 등에 게 가족요양비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며, 2023년 기준 12.81%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다음으로,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본인부담금(비율)은 시설급여가 20%(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으로 비급여항목), 재가급여는 15%이다. 단,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최대 60%를 경감받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를 거친다(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prevPath=/npbs/e/b/101/npeb101m01.web>에서 2023.07.06. 인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³⁷⁾ 의료보장 적용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00.3만 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와 인정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0.3%, 15.1% 증가한 111.3만 명, 77.2만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9.6%로 나타났다(〈표 5-20〉 참고).

〈표 5-20〉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신청·인정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 인구 ¹⁾		7,611,770	8,003,418	5.1
신청자		1,009,209	1,113,093	10.3
등급판정자(등급 내 + 등급 외)		831,512	929,003	11.7
인정자	수 (판정 대비 인정률)	670,810 (80.7)	772,206 (83.1)	15.1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8.8	9.6	9.1

주: 1) 건강보험 적용 인구 746만 명, 의료급여 4만 명, 기초수급 50만 명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9.03.).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382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D%86%B5%EA%B3%84%EC%97%B0%EB%B3%B4>에서 2023. 07.11. 인출.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2019년 12월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인정자 수는 77.2만 명으로 나타났다. 각 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4.5만 명, 2등급 8.7만 명, 3등급 22.6만 명, 4등급 32.6만 명, 5등급 7.3만 명, 인지지원등급 1.6만 명으로, 4등급의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다.

37)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하여 제3장, 제4장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중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 5-21〉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인정등급별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정자 계	772,206	44,504	86,678	226,182	325,901	73,294	15,647
일반	376,440	22,167	41,153	109,755	157,153	37,663	8,549
감경	265,244	15,104	31,647	80,832	109,013	23,933	4,715
의료급여 ¹⁾	9,221	483	1,046	2,661	4,020	859	152
기초수급 ²⁾	121,301	6,750	12,832	32,934	55,715	10,839	2,231

주: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9.03.).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
험공단보도자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382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D%86%B5%EA%B3%84%EC%97%B0%EB%B3%B4>에서 2023.
07.11. 인출.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2019년 급여 이용 수급자 수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73.2만 명, 급여 제공 일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억 5,434만 일이었다. 총 연간 급여비는 전년 대비 21.2% 증가한 8조 5,653억 원으로 이 중 90.3% 수준인 7조 7,363억 원이 공단부담금이었다. 또한,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8만 원,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16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5-22〉 노인장기요양보험 2019년 급여 실적 현황

(단위: 명, 만 일, 억 원, %, 원)

구분	2018	2019	전년 대비 증감률
급여 이용 수급자 ¹⁾	648,792	732,181	12.9
급여 제공 일수	13,593	15,434	13.5
급여비	70,670	85,653	21.2
공단부담금	62,992	77,363	22.8
공단부담률 ²⁾	89.1	90.3	1.3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208,942	1,284,256	6.2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	1,077,291	1,159,922	7.7

주: 1)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장기요양급여 지급자 수

2) 공단부담금/급여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9.03.).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382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D%86%B5%EA%B3%84%EC%97%B0%EB%B3%B4>에서 2023. 07.11. 인출.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현황

앞서 살펴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인정, 인정등급별 인원, 급여 실적 현황 외에 급여유형별 이용 여부, 현재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이유, 미이용자의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장기요양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규모,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201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수급자 6,000명,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장기요양요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강

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을 의미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 또한, 이용자는 수급자 중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자를, 미이용자는 등급판정은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조사표는 3종(① 수급자 및 가족, ② 장기요양기관, ③ 장기요양요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본 절에서 활용하는 수급자 및 가족 조사표에는 가구특성, 건강 및 의료이용, 장기요양급여 이용 현황, 장기요양급여유형별 만족도, 미이용자의 가구형태, 미이용 사유, 장기요양급여 이용 경험, 향후 장기요양급여 이용 의향 등에 관한 질문과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의 제3장, 제4장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5장의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이하에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

〈표 5-23〉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를 보여준다. 전체 수급자 중 77.5%는 이용자(재가급여 54.5%, 시설급여 23.0%), 22.5%는 미이용자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3.0%)에 비해 여성(79.1%)에게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미만 66.7%, 80-84세 76.9%, 90세 이상 82.4% 등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60.2%, 2등급 75.9%, 3등급 80.3%, 4등급 82.2%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클수록 오히려 이용 비율이 낮은 양상이 확인되었다. 다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큰 경우 시설 급여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이용 비율은 농어촌 80.2%, 중소도시 77.2%, 대도시 75.1% 순으로 높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72.9%)에 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79.7%)에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³⁸⁾에 따라서도 이용 비율이 다른데, 결정자가 수

급자 본인인 경우 62.1%, 수급자의 배우자인 경우 75.1%,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 78.6% 등으로 나타나 이용 여부 결정자가 수급자 본인일 때보다 타인일 때 이용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표 5-23〉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이용	재가 급여	시설 급여	미이용
전체		77.5	54.5	23.0	22.5
성별	남성	73.0	55.4	17.7	27.0
	여성	79.1	54.2	25.0	20.9
연령대	65세 미만	66.7	48.4	18.3	33.3
	65-69세	76.3	60.6	15.7	23.7
	70-74세	76.0	59.4	16.6	24.1
	75-79세	74.8	57.9	16.9	25.2
	80-84세	76.9	54.2	22.7	23.1
	85-89세	79.0	54.1	24.9	21.0
장기요양 인정등급	90세 이상	82.4	49.2	33.2	17.7
	1등급	60.2	23.3	36.9	39.8
	2등급	75.9	32.8	43.1	24.1
	3등급	80.3	51.7	28.6	19.8
	4등급	82.2	66.5	15.7	17.8
	5등급	69.8	64.8	5.0	30.2
지역	인지지원등급	18.2	16.9	1.3	81.8
	대도시	75.1	57.5	17.6	24.9
	중소도시	77.2	52.2	25.0	22.8
	농어촌	80.2	53.5	26.7	19.8
배우자	유	72.9	60.1	12.8	27.1
	무	79.7	51.8	27.9	20.3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	수급자 본인	62.1	48.9	13.2	37.9
	수급자의 배우자	75.1	63.3	11.8	24.9
	수급자의 자녀	78.6	52.6	26.0	21.4
	그 외	84.8	61.4	23.4	15.2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38) ‘장기요양급여의 이용결정(이용·미이용, 급여유형, 장기요양기관 등)에 있어 누구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표 5-26〉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여러 특성들을 비교·분석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표 5-24〉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체 미이용자 중 52.2%는 일반 가정, 47.2%는 (요양)병원, 0.2%는 사회복지생활시설, 0.4%는 기타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일반 가정 거주율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성별로는 여성(51.0%)에 비해 남성(54.8%)에게서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으며, 연령별로는 80-84세에서 57.2%로 가장 높았으며, 65세 미만에서 36.8%로 가장 낮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별로는 1등급 13.1%, 2등급 24.1%, 3등급 44.1%, 4등급 64.2%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클수록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농어촌(59.6%), 중소도시 (51.2%), 대도시 (4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자(47.1%)보다 유배우자(60.2%)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있는 미이용자는 배우자로부터의 돌봄 제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 일반 가정 거주율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경우는 59.3%, 45.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미이용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게 잠재적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보다는 미이용자 본인이 일반 가정 거주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표 5-24〉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의 현재 거주지

(단위: %)

구분		계	일반 가정	(요양)병원	사회복지 생활시설	기타
전체		100.0	52.2	47.2	0.2	0.4
성별	남성		54.8	44.2	0.3	0.7
	여성		51.0	48.7	0.2	0.2
연령대	65세 미만		36.8	61.1	0.0	2.0
	65-69세		45.5	49.8	0.0	4.8
	70-74세		53.5	45.2	1.3	0.0
	75-79세		54.2	45.8	0.0	0.0
	80-84세		57.2	42.4	0.4	0.0
	85-89세		52.5	47.5	0.0	0.0
	90세 이상		47.0	53.0	0.0	0.1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13.1	86.9	0.0	0.0
	2등급		24.1	75.0	0.9	0.0
	3등급		44.1	56.0	0.0	0.0
	4등급		64.2	34.4	0.3	1.1
	5등급		80.7	19.2	0.0	0.1
	인지지원등급		96.2	3.8	0.0	0.0
지역	대도시		47.6	51.8	0.0	0.6
	중소도시		51.2	48.4	0.0	0.4
	농어촌		59.6	39.6	0.8	0.0
배우자	유		60.2	39.2	0.3	0.3
	무		47.1	52.4	0.2	0.4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	수급자 본인		84.5	13.9	0.8	0.8
	수급자의 배우자		59.3	39.8	0.0	0.9
	수급자의 자녀		45.1	54.7	0.2	0.0
	그 외		39.1	59.2	0.0	1.7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이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특성을 비교하고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선별 기준으로 〈표 5-25〉를 활용하였다. 장기요양

급여 미이용자는 거주하는 장소에 따라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 (요양)병원 및 기타 거주 미이용자로 구분이 가능한데, 후자는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전자에 비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요양)병원 및 기타 거주 미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등급 비율은 1-3등급 18.8%, 19.7%, 31.9% 등으로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에 비하여 1-3등급 비율이 각각 16.2%p, 14.0%p, 8.9%p 높게 나타났다(<표 5-25>).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매우 큰 자들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중 대부분은 '집중적인 의료 및 돌봄 필요에 의한 병원 입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할 경우 의미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요양)병원 및 기타 거주자는 제외하고 일반 가정 거주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동일한 이유로 시설급여 이용자도 제외하고 재가급여 이용자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³⁹⁾

<표 5-25>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등급 현황

(단위: %)

장기요양인정등급	이용자		미이용자	
	재가급여 이용자	시설급여 이용자	일반 가정 거주	(요양)병원 및 기타
1등급	2.5	9.4	2.6	18.8
2등급	7.0	21.8	5.7	19.7
3등급	29.5	38.7	23.0	31.9
4등급	50.4	28.1	40.1	24.5
5등급	10.1	1.9	17.6	4.6
인지지원등급	0.5	0.1	10.9	0.5
계	100.0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39) 실제로 <표 5-25>에 제시된 장기요양인정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가 유사하고, 시설급여 이용자와 (요양)병원 및 기타 거주 미이용자가 유사하다.

〈표 5-26〉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다양한 특성들을 비교해본다. 남성의 비율은 재가급여 이용자(27.7%)보다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34.2%)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두 그룹 간의 연령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장기요양인정등급 중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3등급과 4등급의 비율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그룹 간 거주지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배우자 비율은 재가급여 이용자(36.0%)에 비하여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45.2%)에게서 약 10%p 높았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의 돌봄 제공을 기대하여 재가급여를 이용하기보다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에 거주하기로 결정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구형태를 살펴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가구 비율은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24.3%)에 비해 재가급여 이용자(34.0%)에게서 높고,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돌봄이 더 수월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모두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가 수급자 본인일 확률은 재가급여 이용자(7.7%)보다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23.4%)에게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가 수급자의 배우자일 확률은 두 그룹 간 유사(13.6%, 14.8%)하며, 수급자의 자녀일 확률은 재가급여 이용자에게서 56.4%로,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에 비해 10%p 높았다. 이를 통해 재가급여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 수급자 본인은 상대적으로 후자를 선호하며, 수급자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5-26〉 재가급여 이용자,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의 특성 비교

(단위: %)

구분		재가급여 이용자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
성별	남성	27.7	34.2
	여성	72.3	65.8
	계	100.0	100.0
연령대	65세 미만	3.3	3.9
	65-69세	5.2	4.3
	70-74세	8.7	8.7
	75-79세	18.0	19.7
	80-84세	26.1	29.5
	85-89세	23.6	22.3
	90세 이상	15.0	11.7
장기요양인정등급	1등급	2.5	2.6
	2등급	7.0	5.7
	3등급	29.5	23.0
	4등급	50.4	40.1
	5등급	10.1	17.6
	인지지원등급	0.5	10.9
지역	대도시	37.3	35.7
	중소도시	30.4	31.4
	농어촌	32.3	32.9
배우자	유	36.0	45.2
	무	64.0	54.8
가구형태	단독가구	34.0	24.3
	부부가구	24.8	29.8
	자녀동거가구	31.9	34.4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7.4	9.9
	기타	1.9	1.7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	수급자 본인	7.7	23.4
	수급자의 배우자	13.6	14.8
	수급자의 자녀	66.4	56.4
	그 외	12.3	5.5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표 5-27〉에는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1순위)를 제시하였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전체 인원의 미이용 사유 중 가족 외 도움을 꺼린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12.1%), 타인의 도움 필요 없음(10.9%), 타 서비스 충분 및 기타(8.8%), 장기요양급여 불신 및 불만족(4.4%), 나중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받아 놓음(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외 도움을 꺼리는 비율은 남성, 65-74세, 유배우자 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클수록(장기요양인정등급), 유배우자인 경우,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자녀동거가구 등 가구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1순위)

(단위: %)

구분		가족외도움 꺼림	가족돌봄 충분	타인도움 필요없음	경제적부 담(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불신 및불만족	장기요양 등급미리 판정	타서비스 충분 및 기타
전체		40.3	21.5	10.9	12.1	4.4	1.9	8.8
성별	남성	43.7	19.6	8.8	12.3	4.4	3.1	8.2
	여성	38.5	22.6	12.1	12.1	4.4	1.3	9.1
연령대	65세 미만	38.9	16.7	0.0	22.2	5.6	0.0	16.7
	65-69세	60.2	14.9	5.0	10.0	0.0	10.0	0.0
	70-74세	54.1	17.5	14.8	8.7	4.9	0.0	0.0
	75-79세	34.4	21.8	12.0	14.2	4.4	2.2	11.0
	80-84세	38.7	21.7	13.8	11.7	4.7	2.2	7.3
	85-89세	42.4	23.1	9.6	11.5	1.9	0.0	11.4
	90세 이상	33.0	24.8	7.3	11.0	9.2	3.7	11.0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33.1	33.9	0.0	0.0	0.0	0.0	33.1
	2등급	52.4	27.6	0.0	11.2	3.7	0.0	5.1
	3등급	45.8	19.7	4.7	13.6	5.1	1.9	9.3

구분		가족외도 움꺼림	가족돌봄 충분	타인도움 필요없음	경제적부 담(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불신 및불만족	장기요양 등급미리 판정	타서비스 충분 및 기타
	4등급	37.6	21.3	12.3	16.1	4.8	1.6	6.4
	5등급	39.6	20.7	15.8	9.7	3.7	2.4	8.1
	인지지원등급	35.3	21.6	19.6	2.0	3.9	3.9	13.7
지역	대도시	41.2	22.4	7.2	12.6	6.3	1.8	8.4
	중소도시	43.0	20.4	9.6	12.3	4.1	2.7	7.9
	농어촌	36.7	21.7	16.3	11.4	2.6	1.3	10.1
배우자	유	44.2	24.3	9.0	12.1	2.4	1.4	6.6
	무	37.1	19.3	12.5	12.1	6.1	2.4	10.6
가구형태	단독가구	38.6	12.4	20.3	6.2	7.5	0.9	14.1
	부부가구	43.3	22.5	10.8	14.8	2.2	1.4	5.0
	자녀동거가구	41.3	25.1	3.1	15.6	3.7	1.9	9.4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37.0	30.4	13.0	6.5	2.2	6.5	4.3
	기타	12.5	12.5	25.0	12.5	25.0	0.0	12.5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	수급자 본인	42.2	12.9	16.5	14.7	2.8	1.8	9.2
	수급자의 배우자	45.3	27.7	1.5	15.3	5.8	1.5	2.9
	수급자의 자녀	38.7	24.0	10.7	11.4	3.0	1.9	10.3
	그 외	35.2	16.1	15.7	0.0	21.4	3.9	7.8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표 5-28〉에는 추가로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2순위를 제시하였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며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 외에 가족 외 도움 꺼림(17.8%), 나중을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받아놓음(10.6%), 타인의 도움 필요 없음(9.6%), 타 서비스 충분 및 기타(7.5%), 장기요양급여 불신 및 불만족(7.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8〉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2순위)

(단위: %)

구분		가족외도 움켜림	가족돌봄 충분	타인도움 필요없음	경제적부 담(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불신 및불만족	장기요양 등급미리 판정	타서비스 충분 및 기타
전체		17.8	29.3	9.6	18.0	7.1	10.6	7.5
성별	남성	15.9	36.0	9.1	16.6	5.0	8.3	9.2
	여성	18.8	26.0	9.8	18.7	8.2	11.8	6.7
연령대	65세 미만	13.3	33.3	6.7	33.3	0.0	6.7	6.7
	65-69세	5.6	27.8	16.7	16.7	0.0	16.7	16.7
	70-74세	10.7	33.4	5.3	32.0	5.3	8.0	5.3
	75-79세	22.6	27.7	7.5	15.1	7.0	12.6	7.5
	80-84세	16.2	31.5	13.5	13.6	9.9	9.0	6.4
	85-89세	15.5	29.0	10.7	20.9	8.3	11.9	3.6
	90세 이상	31.0	23.8	2.4	11.9	4.8	9.5	16.7
장기요양 인정등급	1등급	12.3	37.0	0.0	37.0	0.0	0.0	13.6
	2등급	9.4	48.5	4.7	14.1	4.7	4.7	14.1
	3등급	15.4	33.6	6.6	15.4	13.7	9.9	5.5
	4등급	21.1	24.9	7.7	20.5	6.1	12.1	7.7
	5등급	13.6	28.8	16.6	19.0	5.4	9.1	7.6
	인지지원등급	22.7	27.3	15.9	11.4	2.3	13.6	6.8
지역	대도시	18.7	28.4	7.6	18.8	6.2	11.8	8.4
	중소도시	21.2	33.0	5.9	15.7	7.2	8.5	8.5
	농어촌	13.6	27.1	15.2	19.2	8.0	11.2	5.6
배우자	유	16.8	36.1	7.8	17.4	5.0	8.4	8.5
	무	18.7	23.7	11.0	18.5	8.9	12.5	6.7
가구형태	단독가구	20.9	19.1	15.6	22.5	4.2	13.6	4.2
	부부가구	19.9	32.5	6.9	17.3	5.2	6.9	11.3
	자녀동거가구	16.7	33.4	8.8	15.2	9.2	11.1	5.6
	자녀 및 손자녀 동거가구	11.9	33.3	7.1	19.1	9.5	14.3	4.8
	기타	0.0	25.0	0.0	12.5	25.0	0.0	37.5
장기요양 급여 이용 여부 결정자	수급자 본인	16.8	30.3	11.2	19.2	7.9	6.7	7.9
	수급자의 배우자	19.8	33.3	3.6	19.8	5.4	7.2	11.0
	수급자의 자녀	18.3	28.5	10.5	15.3	7.3	12.8	7.3
	그 외	12.8	25.6	8.5	34.1	6.2	12.8	0.0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2. 시사점

장기요양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재가급여 이용자와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 간 비교, 일반 가정 거주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이하에서는 <표 5-23>-<표 5-28>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시사점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시사점은 돌봄의 제공자와 피제공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표 5-27>에서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중, 가족 외 도움을 꺼리거나 가족의 돌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하면 72.7%이다. 해당 응답들은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체에 대한 불신, 불만족 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는 거리가 멀며⁴⁰⁾, 조사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거부감, 장기요양급여 이용의 불필요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¹⁾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돌봄의 피제공자 뿐 아니라 돌봄의 제공자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관련 논의를 위하여, 먼저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돌봄 제공 부담 정도,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하여 <표 5-29>, <표 5-30>

40) 미이용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불신', '장기요양급여 이용 불만족으로 이용 중단' 또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선택할 수 있다.

41) 한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재가급여 수급 비율은 2020년 기준 7.4%로, 호주(8.0%), 체코(9.2%), 독일(15.6%), 노르웨이(10.8%), 스웨덴(12.8%), 스위스(18.4%)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4>). 동 비율의 차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결과겠으나, <표 5-27>에서 확인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높은 거부감 등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는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 대신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⁴²⁾ <표 5-25>에 따르면, 일반 가정 거주 미이용자와 재가급여 이용자 간 장기요양인정등급 비율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근거로 돌봄 제공의 빈도 및 부담 정도 등이 두 그룹 간에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표 5-29>, <표 5-30>에 명시된 값들을 차용하여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돌봄 제공 부담 정도를 살펴본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를 살펴보면, 각각의 내용을 주 1회 이상 제공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86.7%(주 3회 이상 72.7% + 주 1-2회 14.0%),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53.1%,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69.9%,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69.5%로 나타났다.

<표 5-29>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빈도

(단위: %)

구분	계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
안부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100.0	72.7	14.0	8.3	5.0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37.8	15.3	26.5	20.4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55.7	14.2	11.6	18.5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56.7	12.8	12.0	18.4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42)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각의 돌봄 제공에 따른 심적 부담 정도는 <표 5-30>에 제시하였다. 각각의 돌봄 제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비율(매우 부담된다+부담된다)은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23.5%,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36.1%,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29.5%,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38.0%로,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비율은 평균적으로 31.8%로 나타나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⁴³⁾

<표 5-30>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돌봄 제공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계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안부 확인, 말벗 등 정서적 지원	100.0	6.1	17.4	29.7	30.3	16.5
병원 동행, 생필품 구입, 외출 등 일상생활지원		9.6	26.5	30.1	21.2	12.6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8.2	21.3	33.9	22.4	14.3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12.5	25.5	28.8	20.0	13.2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또한,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의 1순위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자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은 일상생활이나 신체수발 등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

43) <표 5-30>에서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에 대한 부담감이 해당 돌봄 제공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담을 느끼는 비율(매우 부담된다+부담된다)은 주 3회 이상 44.6%, 주 1-2회 44.8%, 월 1-3회 28.9%, 월 1회 미만 19.1%로 돌봄 제공 빈도가 높을수록 부담의 정도도 큰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해당 분석 결과는 <부표 5>에 제시하였다.

났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미이용했다고 응답한 자들의 ‘지난 3개월 동안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수발 등은 주로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1순위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7%에 불과하였으며, 91.3%는 도움을 받았다.

〈표 5-31〉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미이용한 자들에게 제공된 도움 현황

(단위: %)		
돌봄 제공자	1순위	2순위
없음	8.7	0.6
배우자	35.5	3.9
아들·딸	37.0	59.6
며느리·사위	7.7	19.6
그 외	11.1	16.3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표 5-29〉와 〈표 5-30〉에서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를 차용하여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를 유추하였으며, 부담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재가급여 이용으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 경감분을 고려하면 미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부담 정도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 〈표 5-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로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이용자 가족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돌봄 제공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덕분에 부담이 완화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에 따르면, 수급자나 가족의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에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된다 +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2.5%, 수급자나 가족의 정신적 부양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나타나는 등 90% 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32〉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재가급여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계	매우 도움 된다	도움 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급자나 가족의 신체적 부양부담 완화	100.0	51.1	41.4	6.2	1.2	0.1
수급자나 가족의 정신적 부양부담 완화		51.0	40.3	7.2	1.3	0.3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표 5-33〉에서는 재가급여에 대한 만족도를 급여유형별로 추가로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재가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보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는 단기보호를 제외한 모든 급여유형에서 9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재가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주야간보호를 제외한 모든 급여유형에서 90점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만족도가 재가급여 이용자의 만족도보다 평균 14.3점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33〉 재가급여 이용자와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재가급여 만족도

(단위: %)			
구분	재가급여 이용자(A)	재가급여 이용자의 가족(B)	만족도 차이(B-A)
방문요양	79.2	90.1	10.9
방문목욕	85.1	92.7	7.6
방문간호	69.5	91.2	21.7
주야간보호	90.4	94.7	4.3

단기보호	44.6	71.7	27.1
평균	73.8	88.1	14.3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가정에 거주하는 미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 사유 중 가족 외 도움을 꺼린다고 응답한 비율 40.3%,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 21.5%,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 10.9%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을 꺼리고 돌봄의 제공자로 가족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부양의 의무가 정부·사회가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⁴⁴⁾

또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 중 90% 이상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이용 여부의 주된 결정자가 수급자 본인인 경우의 장기요양급여 미이용률이 배우자 혹은 자녀일 경우와 비교해 더 높았다. 이는 수급자가 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의 필요성뿐 아니라 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자가 겪게 되는 부담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선호와는 별개로 수급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의 수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가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44) 다만, '귀하는 부모님의 노후를 주로 누가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13세 이상 인구의 응답을 살펴보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22년 19.7%로 20%p 이상 하락하였으며, '가족·정부·사회가 함께'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8년 43.6%에서 2022년 62.1%로 상승(KOSIS, 2022b)하는 등 부모 봉양에 대한 의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가급여 이용자보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에게서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절의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제4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련 정책 추진 시 가족에 대한 돌봄 제공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막연한 거부감, 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의 필요성과 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자가 겪게 되는 부담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등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더불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비공식 노인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제3장에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제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비공식 돌봄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가족 구성원별로는 어머니, 형제자매, 배우자의 어머니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 중 절반 미만이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였으며, 돌봄의 대상자는 어머니, 배우자, 배우자의 어머니 순으로 높았다. 또한, 지난 1년 중 돌봄의 강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돌봄 제공 기간은 평균 44.1주이며, 50주를 초과하는 비율은 61.4%로 나타났고,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평균 36.0시간으로 확인되었다.

가족 구성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게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을 8.1%p(13.4%), 연간 근로기간을 약 0.7개월(10.1%), 경제상태 만족도를 약 2.6점(4.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 제공자들은 근로 강도를 조절하기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방식의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돌봄 제공자의 여러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별로는 대졸 이상보다 고졸 이하에게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45-54세에 비해서 55-64세에게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로는 가구 소득이 평균 미만인 경우에 비해 평균 이상인 경우에,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4명 이하인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돌봄의 대상자가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도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강도인 주당 10시간 미만의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로짓, 프로빗, 패널 로짓 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가 선형확률 모형의 일종인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조사 사이에 사망한 자들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마모 편의가 큰 수준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5차례 이상 응한 자들, 7차례 모두 응한 자들, 기존 패널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본 선택 편의가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 제공은 돌봄 제공자의 근로

확률, 연간 근로기간, 경제상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지도 개선, 인식 제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 제도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추진과 더불어 본인에 대한 돌봄 제공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강은나, 이윤경, 임정미, 주보혜, 배혜원. (2019). **2019년도 장기요양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은나, 최경덕, 이상우, 최유정, 김명일, 문성현, 박소정. (2022). **고령자의 일과 사회활동 정책 모니터링과 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소희, 김호범. (2007). 노동력 공급 감소와 질적 향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산업경제연구**, 20(1), 73-95.
- 고용노동부. (2019-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원자료.
- 고용노동부. (2023).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https://www.moe.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300550에서 2023. 03.16. 인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9.03).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600m01.do?mode=view&articleNo=138229&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ED%86%B5%EA%B3%84%EC%97%B0%EB%B3%B4>에서 2023. 07.11. 인출
- 류한별, 김가현. (2022). 성인자녀의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2(4), 93-109.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
- 안미영. (2022). 한국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과 경제활동참여. **아시아여성연구**, 61(1), 175-210.
- 윤나영.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중년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공급에 미

- 치는 영향.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2), 1-21.
- 이보라, 송수진, 지수인, 강정훈. (201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26(1), 177-199.
- 이정숙, 강기정. (2015). 경력단절여성의 희망근로형태 (시간제/전일제) 에 영향을 미치는 재취업결정요인. **인적자원개발연구**, 18(4), 23-51.
- 정경희, 강은나, 김경래, 오영희, 오미애, 이윤경, ... 홍송이.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미현, 신미아. (2006).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2(2), 170-177.
- 조하현, 임성훈, 임형우. (2019).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VARX 모형을 이용한 한국 (1987~ 2017) 사례 분석. **한국경제연구**, 37(4), 113-141.
- 최경덕, 안태현. (2019). 비공식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관한 분석. **보건사회연구**, 39(1), 39-71.
- 통계청. (2022.12.01).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5&act=view&list_no=422053&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keyField=T&keyWord=%EA%B0%80%EA%B3%84%EA%B8%88%EC%9C%B5%EB%B3%B5%EC%A7%80&bodo_b_type=all에서 2023. 04. 12. 인출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 함선유. (2017). 비공식 돌봄과 시장 노동 참여: 일상생활활동에 제약이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사회보장연구**, 33(4), 295-321.

- 허민숙. (2019). 국내·외 가족돌봄휴가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8610호 (202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01호 (2023).
- 도로교통법, 법률 제19357호 (20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1호 (202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2021).
- 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2021).
- 고용보험법, 법률 제19210호 (2022).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048호 (2023).
- Amirkhanyan, A. A., & Wolf, D. A. (2006). Parent care and the stress process: Findings from panel data.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1(5), S248-S255.
- Bolin, K., Lindgren, B., & Lundborg, P. (2008). Your next of kin or your own career?: Caring and working among the 50+ of Europ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3), 718-738.
- Carmichael, F., & Charles, S. (1998). The labour market costs of community care.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7(6), 747-765.
- Carmichael, F., & Charles, S. (2003a). The opportunity costs of informal care: does gender matter?.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5), 781-803.
- Carmichael, F., & Charles, S. (2003b). Benefit payments, informal care and female labour supply. *Applied Economics Letters*, 10(7), 411-415.
- Casado-Marín, D., García-Gómez, P., & López-Nicolás, Á. (2011). Informal care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among middle-aged women in Spain. *SERIEs*, 2, 1-29.

- Coe, N. B., & Van Houtven, C. H. (2009). Caring for mom and neglecting yourself? The health effects of caring for an elderly parent. *Health economics*, 18(9), 991-1010.
- Costa-Font, J., & Vilaplana-Prieto, C. (2023). Caregiving subsidies and spousal early retirement intentions.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 Finance*, 22(4), 550-589.
- Crespo, L., & Mira, P. (2014). Caregiving to elderly parents and employment status of European mature wome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6(4), 693-709.
- Dautzenberg, M. G., Diederiks, J. P., Philipsen, H., Stevens, F. C., Tan, F. E., & Vernooij-Dassen, M. J. (2000). The competing demands of paid work and parent care: Middle-aged daughters providing assistance to elderly parents. *Research on Aging*, 22(2), 165-187.
- Dentinger, E., & Clarkberg, M. (2002). Informal caregiving and retirement timing among men and women: Gender and caregiving relationships in late midlife. *Journal of Family Issues*, 23(7), 857-879.
- Do, Y. K. (2008). The effect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market outcomes in South Korea. *Asia Health Policy Program Working Paper*, (1).
- Ettner, S. L. (1995). The impact of "parent care" on female labor supply decisions. *Demography*, 32(1), 63-80.
- Ettner, S. L. (1996). The opportunity costs of elder car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1(1), 189-205.
- Fu, R., Noguchi, H., Kawamura, A., Takahashi, H., & Tamiya, N. (2017). Spillover effect of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as an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6, 103-112.

- Geyer, J., & Korfhage, T. (2015). Long-term Care Insurance and Carers' Labor Supply-A Structural Model. *Health economics*, 24(9), 1178-1191.
- Heitmueller, A. (2007). The chicken or the egg?: Endogeneity in labour market participation of informal carers in England.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6(3), 536-559.
- Huber, M., Hennessy, P., Izuni, J., Kim, W., & Lunsgaard, J. (2005).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Par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Johnson, R. W., & Lo Sasso, A. T. (2006). The impact of elder care on women's labor supply. *INQUIRY: The Journal of Health Care Organization, Provision, and Financing*, 43(3), 195-210.
- Johnson, R. W., & Wiener, J. M. (2006). *A profile of frail older Americans and their caregivers*.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King, D., & Pickard, L. (2013). When is a carer's employment at risk? Longitudinal analysis of unpaid care and employment in midlife in England.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1(3), 303-314.
- KOSIS. (2018). **부모 생존, 동거 여부 및 부모의 동거자(가구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13R&vw_cd=MT_ZTITLE&list_id=101_D2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3. 06.26. 인출
- KOSIS. (2020a).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2&vw_cd=MT_ZTITLE&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docId=0249335187&mark

- Type=S&itmNm=%EC%A0%84%EA%B5%AD에서 2023. 03.09. 인출
KOSIS. (2020b). **주당 근무일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C001_6TH&vw_cd=MT_ZTITLE&list_id=380_38002_01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 06.13. 인출
- KOSIS. (2020c). **주당 근무시간(주업 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C002A_6TH&conn_path=I2에서 2023. 06.13. 인출
- KOSIS. (2020d). **근무형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80&tblId=DT_380002_C002A_6TH&conn_path=I2에서 2023. 06.13. 인출
- KOSIS. (2022a). **학력별 임금 및 근로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LCE0003&vw_cd=MT_ZTITLE&list_id=101_ATITLE_10_A001_B00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 06. 13. 인출
- KOSIS. (2022b).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13세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40R&vw_cd=MT_ZTITLE&list_id=101_D2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에서 2023. 09.04. 인출
- Leigh, A. (2010). Informal care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Labour Economics*, 17(1), 140-149.
- Lilly, M. B., Laporte, A., & Coyte, P. C. (2010). Do they care too much to work? The influence of caregiving intensity o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unpaid caregivers in Canada. *Journal of*

- health economics*, 29(6), 895-903.
- Meng, A. (2013). Informal home care and labor-force participation of household members. *Empirical Economics*, 44, 959-979.
- Michaud, P. C., Heitmueller, A., & Nazarov, Z. (2010). A dynamic analysis of informal care and employment in England. *Labour Economics*, 17(3), 455-465.
- Moscarola, F. C. (2010). Informal caregiving and women's work choices: lessons from the Netherlands. *Labour*, 24(1), 93-105.
- Nguyen, H. T., & Connelly, L. B. (2014). The effect of unpaid caregiving intensity 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esults from a multinomial endogenous treatment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100, 115-122.
- OECD. (2020). OECD Family Database: PF2.3 Additional leave entitlements of working parents.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3.08.11. 인출
- OECD. (2023).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23.10.13. 인출
- Pavalko, E. K., & Artis, J. E. (1997). Women's caregiving and paid work: Causal relationships in late mid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4), S170-S179.
- Schmitz, H., & Westphal, M. (2017). Informal care and long-term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56, 1-18.
- Shimizutani, S., Suzuki, W., & Noguchi, H. (2008). The socialization of at-home elderly care an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Micro-level evidence from Japa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20(1), 82-96.
- Stanfors, M., Jacobs, J. C., & Neilson, J. (2019). Caregiving time costs

- and trade-offs: Gender differences in Sweden, the UK, and Canada. *SSM-population health*, 9, 100501.
- Stone, R. I., & Kemper, P. (1989). Spouses and children of disabled elders: How large a constituency for long-term care reform?. *The Milbank Quarterly*, 67(3-4), 485-506.
- Sugawara, S., & Nakamura, J. (2014). Can formal elderly care stimulate female labor supply? The Japanese experience.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34, 98-115.
- Van Houtven, C. H., & Norton, E. C. (2004). Informal care and health care use of older adult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3(6), 1159-1180.
- Wolf, D. A., & Soldo, B. J. (1994). Married women's allocation of time to employment and care of elderly par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4), 1259-1276.



〈부표 1〉 노인의 특성에 따른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 제공 현황

(단위: %)

구분	도움 받음						도움받지 않음
	계	거의 매일	주 2-3회	주 1회	격주 1회	월 1회 이하	
전체	76.5	38.1	17.5	13.2	4.1	3.6	23.5
성							
남성	86.1	58.6	16.1	7.1	2.6	1.7	13.9
여성	72.1	28.7	18.1	15.9	4.8	4.5	27.9
연령							
65-69세	70.0	37.8	19.4	11.5	0.5	0.9	30.0
70-74세	75.4	36.5	18.7	16.3	2.0	2.0	24.6
75-79세	75.0	36.0	17.3	14.5	3.5	3.8	25.0
80-84세	77.6	36.6	17.8	10.9	6.4	5.9	22.4
85세 이상	80.6	42.3	16.0	13.1	5.6	3.6	19.4
배우자							
유	78.6	45.1	19.3	9.6	2.9	1.7	21.4
무	74.2	30.8	15.7	16.7	5.5	5.6	25.8
가구형태							
노인독거	70.5	7.0	16.2	23.8	10.2	13.3	29.5
노인부부	79.1	46.1	17.4	10.0	3.4	2.2	20.9
자녀동거	80.0	48.5	18.9	10.0	1.9	0.6	20.0
기타	53.7	15.8	12.6	21.1	3.2	1.1	46.3

자료: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89를
참고하여 정리·재작성

〈부표 2〉 비공식 노인 돌봄과 돌봄 제공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 간 연관성(OLS)

	(1)	(2)	(3)	(4)	(5)	(6)	(7)
	근로 여부	연간 근로기간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일수	월소득	시간당 소득	경제상태 만족도
돌봄 제공	-0.087*** (0.031)	-0.662* (0.364)	-1.363 (1.806)	0.095 (0.108)	-32.911*** (10.862)	-0.214** (0.089)	-6.822*** (1.279)
성별(ref: 여성)	0.371*** (0.009)	4.474*** (0.109)	2.122*** (0.374)	-0.199*** (0.026)	102.021*** (8.554)	0.465*** (0.053)	-0.661** (0.271)
연령	0.036*** (0.013)	0.467*** (0.152)	0.493 (0.641)	0.013 (0.041)	43.816*** (10.281)	0.204*** (0.076)	1.487** (0.585)
연령 제곱	-0.000*** (0.000)	-0.006*** (0.001)	-0.006 (0.006)	-0.000 (0.000)	-0.468*** (0.095)	-0.002*** (0.001)	-0.013*** (0.005)
배우자 여부	-0.048*** (0.016)	-0.574*** (0.189)	0.506 (0.674)	0.104** (0.045)	21.554** (9.426)	0.023 (0.099)	8.410*** (0.635)
학력(ref: 고졸 이하)	-0.028** (0.012)	-0.224 (0.137)	-3.266*** (0.429)	-0.093*** (0.031)	131.443*** (10.965)	0.843*** (0.074)	7.032*** (0.539)
자가 소유 여부	-0.012 (0.010)	-0.066 (0.122)	-0.024 (0.481)	0.053 (0.033)	42.798*** (7.343)	0.223*** (0.050)	12.993*** (0.543)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0.193*** (0.009)	-2.326*** (0.103)	-1.050*** (0.371)	-0.102*** (0.026)	16.966 (11.396)	0.155** (0.067)	2.803*** (0.327)
자녀 수	0.025*** (0.006)	0.291*** (0.065)	0.257 (0.248)	0.045** (0.018)	10.030*** (3.819)	0.033 (0.037)	0.241 (0.236)
주관적 건강상태 (ref: 보통 이하)	0.072*** (0.007)	0.808*** (0.086)	-0.291 (0.306)	-0.003 (0.021)	19.990*** (6.055)	0.149*** (0.043)	7.510*** (0.322)
ADL/IADL 제한 여부	-0.127*** (0.016)	-1.328*** (0.185)	0.568 (0.662)	0.000 (0.051)	-17.435** (7.199)	-0.110* (0.063)	-6.549*** (0.677)
만성질환 여부	-0.050*** (0.010)	-0.642*** (0.114)	-0.765** (0.390)	-0.066** (0.027)	-1.515 (8.829)	0.038 (0.057)	-1.926*** (0.359)
지역(ref: 대도시 외)	-0.037*** (0.009)	-0.314*** (0.110)	0.485 (0.399)	-0.081*** (0.028)	-0.234 (8.867)	-0.030 (0.053)	-1.931*** (0.416)
상수항	-0.127 (0.352)	-3.092 (4.236)	39.178** (17.791)	5.568*** (1.138)	-98.717*** (281.641)	-4.626** (2.037)	-10.512 (16.441)
관측치	27,396	27,123	16,475	16,474	14,822	14,815	27,392
대상자 수	6,972	6,971	4,731	4,732	4,390	4,386	6,972
R-squared	0.232	0.239	0.035	0.031	0.086	0.060	0.215

주: 1. 조사별 가변수를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부표 3〉 비공식 노인 돌봄이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FE)

	(1)	(2)	(3)	(4)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	우울감 (CESD)	모임 참여 여부	가까운 지인 만남 빈도
돌봄 제공	-2.377** (0.939) [-3.7]	0.645** (0.299) [11.3]	-0.002 (0.022) [-0.2]	0.001 (0.027) [0.2]
관측치	27,391	27,284	27,396	27,395
대상자 수	6,972	6,961	6,972	6,972
R-squared	0.017	0.029	0.009	0.010

주: 1. 성별, 연령, 연령제곱, 배우자 여부, 학력, 자가 소유 여부, 근로소득 제외 개인총소득, 자녀 수, 주관적 건강상태, 본인의 ADL/IADL 제한 여부, 만성질환 여부, 지역, 조사별 가변수를 모두 포함하였음
2. 괄호 안은 추정치의 가구 cluster 표준오차임
3. * p<0.1, ** p<0.05, *** p<0.01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7차 조사 원자료. <https://survey.keis.or.kr/klosa/klosa04.jsp>에서 2023. 01.03. 인출

〈부표 4〉 OECD 가입국 65세 이상 노인의 재가급여 수급 비율

(단위: %)

국가	비율	국가	비율
호주	8.0	리투아니아	25.8
벨기에	7.5	룩셈부르크	7.5
체코	9.2	네덜란드	7.7
덴마크	10.9	뉴질랜드	7.3
에스토니아	6.1	노르웨이	10.8
핀란드	9.2	포르투갈	0.6
프랑스	5.7	슬로베니아	7.1
독일	15.6	스페인	9.4
헝가리	8.4	스웨덴	12.8
이스라엘	24.8	스위스	18.4
이탈리아	6.1		
한국	7.4	평균 ¹⁾	10.3

주: 1) OECD 가입국 전체 평균이 아닌, 동 표에 명시된 가입국들의 평균값을 의미함
자료: OECD. (2023.). Long-Term Care Resources and Utilisation. <https://stats.oecd.org/>에서 2023.10.13. 인출

〈부표 5〉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의 식사,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지원 제공 빈도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매우 부담된다	부담된다	보통이다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주 3회	17.6	27.0	25.7	18.4	11.3
주 1-2회	9.1	35.8	30.2	18.0	7.0
월 1-3회	4.1	24.8	43.2	22.2	5.6
월 1회 미만	4.6	14.5	28.1	24.5	28.3

자료: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원자료.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에서 2023.01.03. 인출